

(사)한국상사법학회 동계공동학술대회

-대주제: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상사법의 대응-

- 일 시 : 2023년 2월 24일(금) 13:00-18:00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국회동문강의실(지하2층)
- 공동주최 : (사)한국상사법학회·성균관대 법학연구원·성균관대 기업법무연구센터·경북대 법학연구원
- 후 원 : 한국예탁결제원

[세부일정]

전체사회 : 총무이사 남궁주현 교수

13:00-13:20 등 록

13:20-13:40 개회식

- 개회사 : 김효신 학회장(한국상사법학회)
- 축 사 : 이해완 법학연구원장(성균관대 법학연구원)

[학술프로그램]

학술사회 : 연구이사 최문희 교수

시간	주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토론자
13:40-14:40	전자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황현영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권종호 교수 (건국대)	장정애 교수 (아주대)	박준선 교수 (제주대)
14:40-15:40	핀테크와 지급결제의 새로운 동향	안태준 교수 (한양대)	김순석 교수 (전남대)	이채진 교수 (홍익대)	이해영 변호사 (여신금융협회)
15:40-16:00	Coffee Break				
16:00-17:00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보호	한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형규 교수 (한양대)	김연미 교수 (성균관대)	천창민 교수 (서울과학기술대)

17:00-17:20 학회연구윤리 교육 (진행:연구이사 최문희 교수)

- 2023년 학회연구윤리 개정사항 및 논문 표절방지프로그램 사용법 안내

17:20-17:40 정기총회 (사회:총무이사 손창완 교수)

- 2022년도 한국상사법학회 업무, 사업연도 결산 보고
- 한국상사법학회 자산내역 보고
- 감사보고
- 한국상사법학회 제13회 우수논문상 시상식
- 차기 회장 선출 및 인사말씀
- 차기 수석부회장 및 감사 선임

17:45 폐회식

18:00 만찬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옥류천)

전자주주총회와 주주의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 경과와 향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황현영

I. 들어가며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업경영에서도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및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주주친화적 경영의 일환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대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였고,¹⁾ 특히 새도보팅페이 및 공정경제 3법으로 추진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으로 인해 전자투표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²⁾ 더욱이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현장의 수요³⁾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⁴⁾ 이러한 입법 수요에 부응하여 주주총회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왔고,⁵⁾ 법무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도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총회의 전자화 논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소집절차의 전자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회의의 전자화이다. 소집절차의 전자화는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및 소집 공고를 전자화 하는 것이고,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는 전자투표를 통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이며, 회의의 전자화는 가상의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회의의 전자화는 현장과 가상

- 1) SK, 기업지배구조헌장·전자투표 "주주친화경영 본격화"(https://www.inews24.com/view/1084792), 삼성전자·현대차그룹도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친화경영 강화"(https://www.ebn.co.kr/news/view/1021854), 롯데그룹 '전자투표' 도입... 주주친화정책 강화(https://www.ajunews.com/view/20210224070719014), CJ, 25~29일 계열사 주총... 전자투표 확대 등 주주친화정책(https://newsis.com/view?id=NISX20190308_0000581650&cID=13001&pID=13000), '책임경영' 포스코, 전자투표 도입 등 주주친화정책 강화(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03/27/2020032700038.html) 등.
- 2) 기업 주총 전자투표 확산... 새도보팅 페지로 탄력(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67200008?input=1179m)
- 3) 상장사 63% 올 주총서 전자투표... "비대면 단독 주총 필요"(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527000208)
- 4) 세계는 '전자 주총' 바람부는데.. 국내는 '넓은 규정' 막혀 제 자리(https://www.fnnews.com/news/202102181443368672)
- 5) 권용수, 전자주주총회 해외사례 및 입법 동향 연구, 상장협연구 202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 권종호, "버추얼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 입법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09; 김성탁, "주주총회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 전자시대에 있어서 기업지배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모색," 「비교사법」 제11권 제3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김순석,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7호, 법무부, 2017; 김신영,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21; 김윤정,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주주총회운영의 전자화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64집; 경북대학교, 2019; 송홍선 외 3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 자본시장연구원, 2018, 윤승영, "코로나19 이후 원격 주주총회 제도화에 대한 소고," 「기업법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기업법학회, 2020; 윤영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외국 입법동향과 전자주주총회 도입관련 제도적 정비사항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16; 정경영, "전자주주총회의 법리에 관한 시론," 「비교사법」 제12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 허원준,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홍복기, "전자주주총회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등 다수.

의 공간을 어느 정도 병행하는지 여부와 가상 공간에서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현장병행형(참가형), 현장병행형(출석형), 현장대체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⁶⁾ 현장병행형(참가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회사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하여 주주들의 온라인 참여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는 유형이다. 현장병행형(출석형)은 현장 주주총회와 가상의 공간에서 주주총회를 병행하는 것으로, 주주들이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형이다. 현장대체형은 현장 주주총회를 생략하고 가상의 공간에서만 주주총회를 하는 유형이다.

본 글에서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전자화, 의결권의 전자화, 회의의 전자화가 각각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경과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미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제도의 운영 현황과 실무의 입법수요⁷⁾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차별화하고자 한다.

II. 소집절차의 전자화

1. 제도의 도입 및 개정 경과

1)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전자적 소집공고

소집절차의 전자화는 비교적 일찍 추진되었는데, 주주총회의 전자화를 전제로 하거나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 아닌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업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상당하므로,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전자적 소집공고를 인정하여 왔다.

1997년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0 제1항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84조의17 제1항에서는 1% 이하의 주주에 대하여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1년 개정된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전자공고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상장회사가 공고를 할 경우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총리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제191조의10 제3항). 이러한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는 2001년부터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에게는 소집통지를 발송하지 않고 전자적 소집공고를 통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6)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현장병행형(참가형), 현장병행형(출석형), 현장대체형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7) 입법수요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주주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기업실무자들에게 주주총회 전자화의 필요성과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조사한 설문결과를 주로 인용하였다. 2022년 4월 21일부터 29일간 전체 상장회사 2,187개사를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9.2%인 638개사가 응답하였고, 이하에서는 '2022년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이름으로 인용하도록 한다(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KLCA ISSUE PAPER」 제77호, 2022.8).

2009년 증권거래법 폐지 이후, 해당 규정은 상법의 상장회사특례규정으로 이관되어 상법 제 542조의4에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542조의4 제1항의 공고를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2) 주주의 동의에 의한 전자적 소집통지

상법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도 허용하고 있다. 2001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만을 인정하였으나, 2001년 개정 상법에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문구를 수정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인정하였다. 2009년 개정 상법에서는 기업경영의 IT화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를 위해서는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구체화 하였다.

2. 제도의 운영 현황

1)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전자적 소집공고

대다수의 상장회사에서 1% 이하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소집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첨부 정관을 기준으로 상장회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99.7%(787개사)이고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96.25%(1,361사)가 전자적 소집공고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표 II-1]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전자적 소집공고 근거 규정 여부⁸⁾

(단위 : 개사, %)

8) 2022년 4월 1일 현재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789개사(신규상장법인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구 분	2022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① 규정 있음	787	99.7	778	99.7
② 규정 없음	2	0.3	2	0.3
계	789	100.0	780	100.0

[표 II -2] 코스닥 상장회사의 전자적 소집공고 근거 규정 여부⁹⁾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2021년	
	회사수	비율	회사수	비율
① 규정 있음	1,361	96.25	1,302	96.23
② 규정 없음	53	3.75	51	3.77
계	1,414	100	1,353	100

그런데 2022년 주주총회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 이하의 주주들에게 전자적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통지한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2022년 4월 1일 현재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2021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설문을 약 1개월간(2022.4.11.~5.20.) 실시한 결과 351개사(45.4%)가 응답하였고, 그 중 129개사(36.7%)는 모든 주주들에게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회사명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87개사는 소집통지에 갈음하는 전자공고가 가능하도록 정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최소 127개사는 주주들에게 개별적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정관으로 서면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투표용지의 송부를 위해 모든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2022년 4월 1일 현재 정관으로 서면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68개사이고 설문에 응답한 회사 중 18개사가 서면투표를 도입하였으므로, 127개사 중 18개사는 서면투표를 위해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105개사는 전자적 소집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에도 모든 주주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주주권의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자발적으로 통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II -3]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소집통지 관련 설문 결과¹⁰⁾

9) 2022년 4월 1일 현재 12월 결산 코스닥상장법인 상장회사 1,414사(외국법인, SPAC, 신규상장법인, 신탁업 및 금융 관련 법인 제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10)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상장협자료 2022-19, 25면.

(단위 : 개사, %)

구 분	2022년		2021년	
	회사수	구성비	회사수	구성비
1% 초과 주주에게만 통지 1% 이하 주주는 전자공고	220	62.7	209	57.6
모든 주주에게 서면통지	129	36.7	153	42.1
일정수 이상 주식 보유 주주에게 통지	2	0.6	1	0.3
계	351	100.0	363	100.0

2) 주주의 동의에 의한 전자적 소집통지

전자적 방법의 소집통지는 현재 상법상 ‘각 주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실무에서 회사가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¹¹⁾ 상장회사의 주주는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증권회사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므로, 계좌 개설 당시 회사가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행 주주명부에는 주주에게 연락할 수단으로 주소만 기재되어 있어 회사가 직접 찾아가서 동의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주명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주주 확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특정 시점에 주주명부를 확정하다 보니, 회사가 필요한 시점에는 이미 해당 주주가 주식을 매도했을 가능성도 있어 주주명부의 주소를 보고 찾아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회사가 주주와 계좌를 개설할 때 약관을 통해 주주의 동의를 사전에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계좌개설약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주주들이 이에 동의하면 상법 제363조 제1항의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부는 증권회사와의 계좌개설약관에 표기된 동의를 회사에 대한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¹²⁾

전자주주명부를 채택한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알 수 있지만(상법 제352조의2),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정관에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둔 회사가 유가증권상장회사의 경우 190개사(34.1%), 코스닥 상장회사의 경우 607개사(42.93%)이나, 이는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하였다 할지라도, 도입 이전부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의 이메일주소를 확보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메일을 통하여 주주들의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1) 황현영, “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따른 검토”, 『법제』 제694호, 법제처, 2021, 162면.

12) 법무부 질의회신(2013. 6. 3. 상사법무과-1761)

주주 입장에서 회사도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동의를 요청할 때, 한국 주식시장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스팸 메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시간 주주명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주주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3. 개선 방안

1) 개선에 대한 입법수요

2022년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회사 실무자들은 ‘통지의 전자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주주총회의 전자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통지의 전자화’라는 답변이 57.5%(366개사)로 가장 많았다.

통지의 전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는 개별통지를 위한 준비작업 등 실무적 부담(433개사, 68.6%), 소집통지 등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 부담(142개사, 22.5%), 오기 재된 개인정보로 인한 우편 반송 등의 기타의견이 있었다.

[표 II-4] 주주총회 전자화 측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¹³⁾

(단위 : 개사, %)

응답	회사 수	비율
주주 통지(소집통지, 배당금 지급 통지 등)의 전자화	366	57.5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128	20.2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142	22.3
합계	636	100.0

주 : 미응답 2개사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자투표 채택회사와 참여 주주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437개사, 68.6%)

[표 II-5] 주주통지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자투표제도에 미치는 영향¹⁴⁾

(단위 : 개사, %)

응답	회사 수	비율
전자투표제 실시 회사 및 전자투표 참여율 증가	437	68.6
전자투표제 실시 회사 및 전자투표 참여율 변화없음	194	30.5
전자투표제 실시 회사 및 전자투표 참여율 감소	6	0.9
합계	637	100.0

주 : 미응답 1개사

13)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8면.

14)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8면.

2) 구체적 개선과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더라도 소집통지를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은 없다.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하더라도, 주주에게 전자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고지하는 본래의 기능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러나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실무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와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소집통지의 전자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무상 주주총회 전자화 측면에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 소집통지의 전자화(57.55%)이고, 통지의 전자화가 이루어질 경우 현행 전자투표제 실시 회사 및 전자투표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실무자들의 응답이 68.6%에 달하였다.

참고로,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에서는 소집통지의 수단으로 주주의 동의 없이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소집통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수단으로 우편이나 전자송신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전자송신은 전자메일 전송 뿐 아니라 회사 웹 사이트 게시 등도 포함된다(DGCL §222(a), §232(a),(b)). 영국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서면통지외에도 전자적 방법, 회사 웹사이트 게재 등 총 3가지가 인정된다(회사법 제 308조, 제309조). 독일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시 회사의 전자적 공고 방법에 의해 하도록 하고 있고, 회사가 주주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 우편으로도 소집통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주식법 제121조 제4항).

회사가 주주들의 개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계좌개설시 소집통지의 전자적 동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상법의 주주명부나 전자증권법의 소유자명부에 주주의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전자주주명부 채택을 장려하는 방안을 통해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소집통지의 동의 뿐 아니라 평소에 IR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¹⁶⁾

한편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전자적 공고 방식을 채택하되, 주주들에게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부작용을 고려하여 절충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이 일정시기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서 주주총회를 일정 기간 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서는 1% 이하의 주식 소유 주주들에게 통지를 생략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자적 공고로 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주주총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 경우라면, 일본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정관에 규정을 두어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함께 주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홈페이지 주소 등을 주주에게 통지하면 당해 정보가 모두 주주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서면에 의한 제공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¹⁷⁾

Ⅲ. 의결권행사의 전자화

1. 제도의 도입 및 개정 경과

1)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15)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9판)」, 박영사, 2021, 513면.

16) 황현영, 앞의 논문(최근 공정경제 관련 입법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제도 변화에 관한 검토), 182면.

17) 허원준, 앞의 논문, 52면.

상법에서는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5월 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201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편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주주의 의사를 주주총회에 반영하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상법 제398조의 4).

입법 당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 활성화와 주주총회 개최비용의 절감을 기대하며 제도를 도입하였고,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였다.¹⁸⁾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주주총회 소집시 대부분의 주주들은 생업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고 대주주나 친기업 주주들만이 참석함으로써 주주들의 의견이 제대로 기업경영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왔는 바, 전자투표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IT기술 발전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켜 총회소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여 소수 의견의 반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주주의 회사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자적 방식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¹⁹⁾ 2000년에 개정된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위임장권유 및 반송의 전자화를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최초로 입법화하였고(§212), 영국도 2006년 개정 회사법에서 도입하였다(§372). 일본은 2001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제정된 회사법도 기존의 전자투표를 그대로 계승하였으며(제298조 제1항 제4호), 독일에서는 2009년 ‘주주권지침을 국내화하기 위한 법률’(ARUG)에 의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새도우보팅 폐지와 전자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나 상법에서는 기업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있어 전자투표가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새도우보팅제도를 이용하는 전제조건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하도록 한 것이 전자투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²⁰⁾

새도우보팅제도(shadow voting)란 실질주주가 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발행회사의 요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이를 중립적으로 행사하는 제도이다(구 자본시장법 제314조 제5항). 새도우보팅제도는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많은 상장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성립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도입되었으나, 주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성립시키는 예외적인 의결권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아 왔고, 이에 2015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새도우보팅제도 폐지를 앞두고 제도의 폐지가 경제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자, 폐지 직전인 2014년 12월 30일에 자본시장법에 부칙을 신설하여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18)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권기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2008, 135면.

19) 황현영,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법학논집』 제30집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325면.

20) 황현영,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의 입법영향분석”, 『NARS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1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6, 32면.

것으로 결정되었다.²¹⁾ 즉,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2017년까지 새도보팅제도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새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정족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

3)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주들이 편리하게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투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였다.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 하고, 전자투표시 철회·변경을 허용하며, 전자투표에 대한 사항을 주주들에게 한번 더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과거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핸드폰·아이핀·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또한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었는데,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그리고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및 전자투표 기간을 전자투표 종료일 3일 전까지 전자 문서로 한번 더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동의를 있으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4) 감사 정족수 완화와 전자투표제도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409조 제3항, 제542조의12 제8항). 과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하였으나, 이제는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로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는 감사 선임의 정족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하게 하는 유인이 되었다.

2. 제도의 운영 현황

1) 전자투표 이용회사 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의 수가 거의 없었고, 이로 인해 2013년 박근

21) 2014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위임장을 권유하는 전자위임장제도도 도입되었으나(제160조 제5호), 이는 의결권 권유와 관련된 것으로 주주가 직접적으로 의결권 행사하는 내용은 아니어서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본 용역에서는 의미있게 분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2010년 9월 최초로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 아시아퍼시픽 11호, 12호였고, 이후 36개의 선박투자회사와 비상장기업 3개사가 전자투표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년 10월 상장회사 최초로 중국회사인 차이나킹하이웨이가 전자투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2년 36개사, 2013년 18개사, 2014년 8개사로 급감하였다.

회사가 전자투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에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전자투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25번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되 일정 상장사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에 법무부는 상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전자투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법무부는 2013년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정 주주수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2013년 9월 10일 2차 공청회 개최 후 입법 추진이 중단되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도 전자투표 의무화 관련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고,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국정과제 모두 전자투표의 의무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후술하는 여러 이유로 전자투표가 활성화되면서 의무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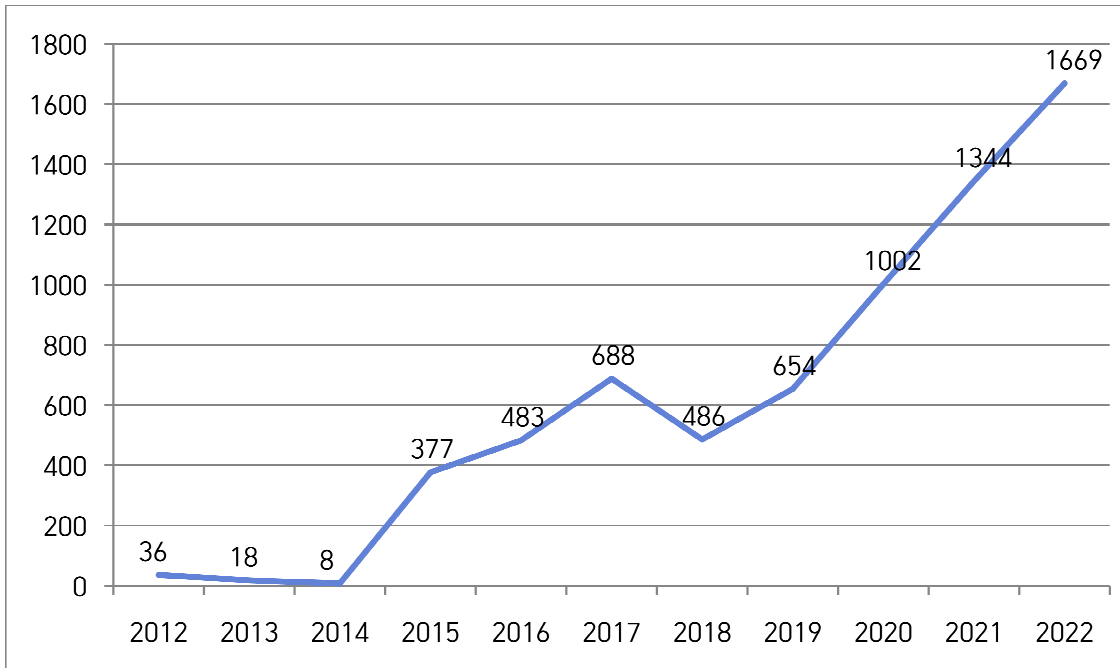
2015년 이후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새도보팅폐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하여 그리고 감사 정족수 완화를 위하여 회사들의 자발적 채택이 늘어났고,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자투표를 채택하는 회사들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주주총회에서 새도보팅제도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전제조건으로 전자투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년 8개사에 불과했던 전자투표 이용회사들이 2015년 377개사로 급증하였다. 2017년까지 새도보팅제도 유예가 적용되었고, 2018년부터 전자투표를 채택하여도 새도보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17년 688개사에서 2018년 486개사로 다소 감소하였다. 2020년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전자투표 이용시 감사위원 정족수가 완화되도록 한 상법 개정,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자투표 이용회사가 2019년 654개사에서 2020년 1002개사로 급증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고, 2022년 주주총회에서는 전체 상장회사의 66%에 해당하는 1669개의 상장회사가 전자투표를 이용하였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회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투표관리기관도 증가하여, 2018년까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독점이었으나 현재는 삼성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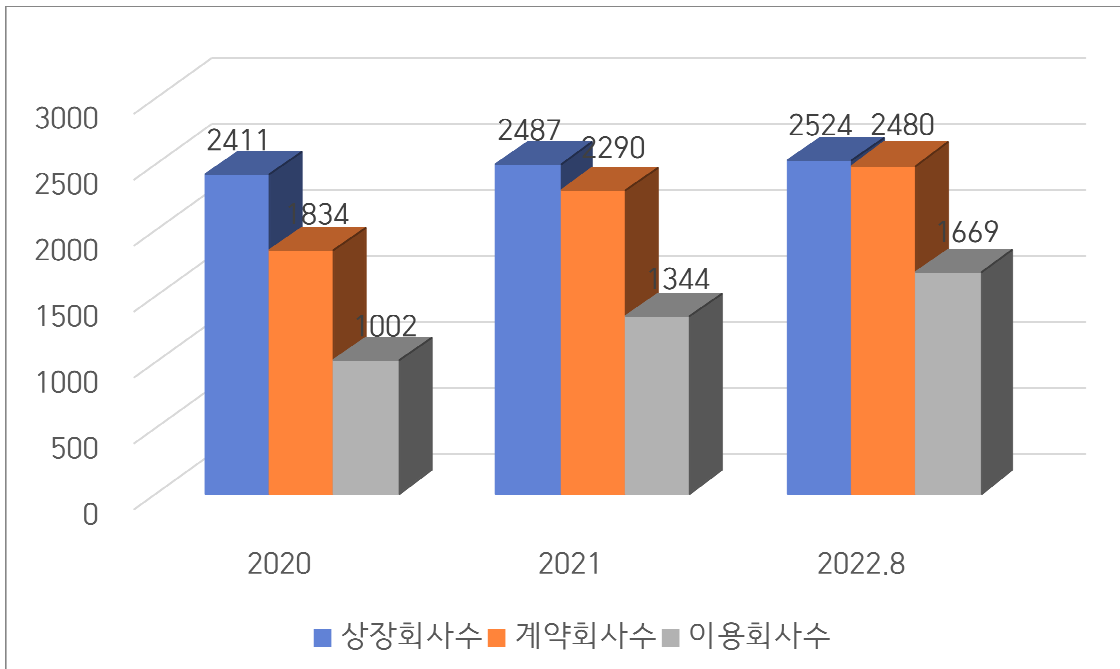
[그림 III-1] 전자투표 이용회사 수²³⁾

22) 2019년에 미래에셋이 2021년에 신한이 전자투표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2022년에는 사업을 중단하였다.

23) 2022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림 III-2] 총 상장회사 수 대비 계약회사/이용회사 수 현황²⁴⁾



2) 전자투표 이용 주주 수

24) 2022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계약회사 수는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참고하기에 부적절하나 비교를 위해 표기하였다. 전자투표 계약 이후 상장폐지 되거나 다른 회사와 계약한 경우 등 허수가 통계에 포함되어 있고, 2022년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은 계약회사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2021년과 동일 수치로 산정하였다.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으나, 조금씩 늘어가고 있고 특히 2022년 정기주총에서 2021년에 비해 5%가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²⁵⁾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행사율만을 기준으로 볼 때, 2022년에 974개사의 상장회사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53.5억주가 전자투표를 이용함에 따라 전자투표행사율은 9.75%이다.²⁶⁾

행사율이 상승한 주된 원인은 올해 국민연금기금의 전자투표 행사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인데, 2022년 3월 정기주총에서 국민연금기금은 상장회사 수 기준 약 47.2%에 대하여 전자투표를 행사하였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주주 수 증가 및 투표 인증방식 확대(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에 힘입어 2021년(약 15.5만명) 대비 약 2배인 약 30.2만명이 전자투표를 행사하였고 행사율은 전년(1.85%)보다 소폭 상승한 2.04%를 보였다.

[표 III-1] '21년·'22년 정기주총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 현황²⁷⁾

구 분	'21년 정기주총	'22년 정기주총
의결권 행사 주식수	22.4억주	53.5억주(31.1억주▲)
총 의결권 있는 주식수	480억주	548.5억주(68억주▲)
행사율	4.67%	9.75%(5.08%p▲)

3. 개선 방안

1) 개선에 대한 입법 수요

이미 상장회사의 66%가 전자투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실무의 입법 요구는 없고, 다만 의무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표 III-2] 전자투표 도입 의무화 반대 이유²⁸⁾

(단위 : 건, %)

응답	응답 수	비율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 침해	51	26.4
실무자 업무 부담 가중	31	16.1
실효성 낮음(참석 및 투표율 증가 비관적)	29	15.0
비용 증가	29	15.0
속고 없는 투표, 반대를 위한 반대표 증가할 것	19	9.8
필요하지 않음(이미 의결권 확보함)	9	4.7

25) 2022년 4월 12일자 한국예탁결제원보도자료 참조.

26)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의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고, 2022년 기준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상장회사의 58.36%가 한국예탁결제원을 이용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상장회사의 전자투표행사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7) 2022년 4월 12일자 한국예탁결제원보도자료, 2면.

28)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8면.

주주의 불편(본인인증 어려움 겪는 고령의 주주 등)	9	4.7
법령 및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혼란 가중	7	3.6
투표 철회 등 의결권 행사 방향 예측의 어려움 등 기타	9	4.7
합계	193	100.0

주 : 자율응답, 중복응답

다만 전자투표제도는 회사의 편의보다는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일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2) 구체적 개선방안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상장회사의 66%가 전자투표를 채택하였으나, 여전히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는 회사의 주주들은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의 주요안건이 다루어지는 주주총회에서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합병과 분할과 같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도,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한컴위드의 물적분할, 유니드비티플러스의 인적분할, 동원산업의 합병, 에이프로젠제약의 합병에서는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하지 않아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체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들이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요청할 경우 회사가 전자투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들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해 줄 것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 역시 주주제안권과 균형을 맞추어 소수주주권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자본금 1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로 요건이 완화된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이러한 주주제안권의 지분율과 균형을 맞추어 전자투표를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020년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위한 본인인증수단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2023년 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26.9%를 보유하고 있으나,²⁹⁾ 외국인들은 현재 본인인증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한국어로 되어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ICJ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위한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서 영문 공시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문 전자투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도 참고할 수 있다.³⁰⁾

29) 2023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3년 1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30) 황현영, “일본 주주총회제도 및 운영 현황을 통한 시사점”, 「증권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증권법

현재 전자투표 시스템은 찬성/반대/기권으로 단순하게 구축되어 있으므로,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전자투표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³¹⁾ 전자투표를 행사한 의안에 대해 주주총회 현장에서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 실무에서 기권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시스템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하여 주주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익배당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의안보다 높은 배당은 찬성한다 또는 의안보다 낮은 배당은 반대한다 등의 세부항목이 추가된다면 주주들의 의사가 더 정확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투표에서도 주주들의 의사에 따른 중립적 의결권 행사가 허용되는 반면, 전자투표에서는 찬성, 반대, 기권 외의 의결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0주를 가진 주주가 중립적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찬반비율이 6:4라면 찬성에 6주, 반대에 4주를 행사한 것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IV. 회의의 전자화

1. 제도의 도입 논의

주주총회 전자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소집통지의 전자화 및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주주총회의 개최 및 운영을 전자적으로 하는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21대 국회에 2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담당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18년 최운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장병행형(출석형)과 현장대체형을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0년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장병행형(출석형)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조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현장병행형(출석형)과 현장대체형을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개의 법률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표 IV-1] 전자주주총회 관련 21대 국회 의원입법안 요약

	김병욱 의원안	조수진 의원안
도입유형	현장병행형(출석형)	현장병행형(출석형) 및 현장대체형
도입방식	이사회 결의로 채택, 정관으로 배제 가능(Opt-out)	정관으로 도입(Opt-in)
소집통지	일반주주와 원격지주주를 구분하여 원격지주주에게 필요양식 등 제공	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 가능여부 통지 및 필요양식과 참고자료 제공
의결권제도	전자투표와 총회 당일 의결권 행사 구분	전자투표와 총회 당일 의결권 행사 구분하지 않음 다만 서면투표, 전자투표, 총회

학회, 2016, 24-28면.
31) 황현영, 앞의 논문(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도의 법적 과제), 339면.

		당일 전자적 의결권 행사 중 1가지를 선택해야 함
의사진행	원격지 주주가 총회 의사 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	구체적인 규정 없음
관리기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위탁 운영 가능	구체적인 규정 없음

2. 제도의 운영 현황

2020년 SK텔레콤이 최초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현행법의 한계로 인하여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21년 24개사 모두 현장병행형(참가형) 방식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현행 상법 제364조에서는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³²⁾ 또한 현행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전자투표를 할 기간(전자투표의 종료일은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하여야 한다)”이라고 되어 있어 전자주주총회의 기반으로 전자투표를 이용할 경우 당일에는 의결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

[표 IV-2] 연도별 전자주주총회 개최 상장회사³³⁾

연도	회사명	총
2020년	SK텔레콤	1
2021년	SK텔레콤, SK하이닉스, KB금융지주, 금호석유화학, 네이버, 대원전선, 미코, 삼성SDI,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전자, 신한금융지주,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알서포트, 에센테크, 진양홀딩스, 포스코홀딩스, 풀무원,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24개사

경제개혁연대에서 2021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 회사 중 5개사를 실제로 모니터링 하여, 중계방법, 소요시간, 온라인 질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회사의 표본은 경제개혁연대가 선정한 것이므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각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모습이 현재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표 IV-3] 2021년 주요 5개사 전자주주총회 진행 현황³⁴⁾

32) 권기범, 「현대회사법론(제8판)」, 삼영사, 2021, 710면; 한국상사법학회(김병태 집필부분), 「주식회사법대계Ⅱ(제3판)」, 법문사, 2019, 195면; 정경영, 앞의 논문, 195면.

33) SK텔레콤, 주주총회 실시간 온라인 중계(<https://www.fnnews.com/news/202003151113545410>), 이승희, “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 주주총회 도입현황, 「ERRI 이슈&분석」 2021-02호, 경제개혁연구소(2021), 6면.

34) 이승희, 앞의 보고서, 8면.

			삼성전자	SK텔레콤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KB금융지주
온라인 중계 방법			웹페이지	웹페이지	웹페이지	웹페이지	유튜브
소요 시간			3시간 30분	1시간 30분	50분	1시간 15분	35분
사업설명회 진행			○	○	○	○	X
온라인 질의 및 답변	방법	사전 접수	○	○	○	△*	X**
		실시간 접수	○	○	X	X	X
	주제	사업 현황	○	○	○	△*	X
		의안 관련	○	○	○	X	X
	답변	사업 현황	○	○	○	X	X
		의안 관련	○	△***	○	X	X
	질의내용 게시		X	X	X	X	X

주 : * 사업설명회에서 다른 주제를 객관식으로 고르거나 ‘기타’ 항목에 적을 수 있는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 서면투표용지에 적어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질의할 수 있다.

*** 주주총회 당일에는 온라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사후에 문서로 회신하였다.

3. 개선 방안

1) 개선에 대한 입법 수요

2022년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회사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주주총회 실무자 중 77.7%인 492개사에서 법률적 근거만 마련하고 도입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표 IV-4] 바람직한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³⁵⁾

(단위 : 개사, %)

응답	회사수	비율
----	-----	----

35)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15면.

법률적 근거만 마련하고 도입은 회사가 자율선택	492	77.7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 의무화	141	22.3
합계	633	100.0

2022년 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장회사 실무자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선호하는 것은 '현장대체형'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주주총회 실무자 중 44.2%가 현장 주주총회의 개최 없는 전자주주총회 방식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다. 가장 선호되지 않는 방식은 현장병행형(출석형)으로 12.4%만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복적 업무부담과 예민한 안전에 대한 침해한 대립시 의결정족수 산정 등 집계 오류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단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은 현장병행형(참가형)으로 43.4%의 응답자가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출석형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참가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표 IV-5]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시 가장 합리적인 방식³⁶⁾

(단위 : 개사, %)

응답	회사수	비율
현장대체형	279	44.2
현장병행형(참가형)	274	43.4
현장병행형(출석형)	78	12.4
합계	631	100.0

만약 현장병행형(출석형) 또는 현장대체형을 도입한다면 실무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률적 리스크(67.2%)와 가결 여부의 변동가능성(60.5%)이다.

[표 IV-6] 현장병행형(출석형) 또는 현장대체형 도입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³⁷⁾

(단위 : 개사, %)

응답	회사수	비율
전자주주총회 개최시 통신장애 등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결의 취소의 소 사유) 발생 문제	429	67.2
당일 전자투표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가결 여부에 대한 변동 가능성 확대	386	60.5
주주의 출석방법, 질문권 제한, 초상권 문제 등 운영 전반에 걸친 가이드 부재	296	46.4

3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15면.

3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앞의 보고서("주주총회 전자화에 대한 설문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16면.

안정적인 주주총회 시스템 제공업체의 부재	175	27.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 부담	129	20.2
기타	9	1.4
합계	1,424	-

2) 구체적 개선과제

(1) 전자주주총회 도입 형태 관련 기본방향

가.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상법에서 허용한다고 했을 때, 물리적 주주총회 없이 전자적으로만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즉 현장대체형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병행형(참가형)을 허용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고, 현장병행형(출석형)을 허용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적은 반면, 현장대체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다.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에 대해서 주주들의 참여 및 의사반영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³⁸⁾ 인터넷 등의 전자적 매체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된다는 문제가 있고, 전자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과 주주의 대면접촉이나 소통이 어렵고 주주간의 소통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러나 실무에서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주주의 구성이나 회사의 특성에 따라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훨씬 효율적인 회사도 존재할 수 있다. 주주가 소수이며 IT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주주의 대부분인 스타트업의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사반영에 효율적일 수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고 회사의 인력이 적어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대체형 주주총회가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현장병행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되,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등 엄격한 요건으로 현장대체형을 허용하도록 하고 회사의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현장 주주총회와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행령에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다. 글로벌 의결권자문사인 Glass Lewis는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의 유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① 주주들이 주주총회 진행 중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주주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 및 허용되는 질문의 범위 ② 다른 주주들에게 공개되는 방식에 대한 자세한 규정 마련 ③ 주주총회에서 받은 적절한 질문에 대해서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회사의 홈페이지에 관련 답변을 게시하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 마련 ④ 현장대체형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술적이고 지리적인 쟁점에 대한 언급 ⑤ 현장대체형 주주총회 동안에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³⁹⁾

38) 윤영신, 앞의 논문, 81-82면.

39) 윤승영, 앞의 논문, 101면.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경우 주주들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총회 검사인을 의무화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의사공정성의 확인을 위해 전자주주총회의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의사운영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므로 선임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⁴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경우, 상법 제364조의 소집지 규정을 개정할 수도 있으나 전자주주총회의 특례 규정을 두어서 소집지 규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입법방식도 가능하다.

나.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절차

상법에 현장병행형 또는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될 경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어떤 절차에 의해 도입할지 여부이다. 대만이나 터키와 같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한 나라에서는 회사의 도입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으나, 전자주주총회를 회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 도입하도록 한 나라에서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개최할 수 있다는 Opt-in 방식과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회사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Opt-out 방식이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운열 의원안과 21대 국회에 발의된 조수진 의원안은 Opt-in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김병욱 의원안은 Opt-out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Opt-out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고,⁴¹⁾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Opt-in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⁴²⁾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전자주주총회 유형별로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달리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⁴³⁾ 현장병행형(출석형) 전자주주총회는 주주들에게 현장 또는 가상 공간의 출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주가 받을 영향력이 적으므로 Opt-out 방식을, 현장대체형 주주총회는 현장에서 개최할 때 보다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으므로 Opt-in 방식을 규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는 견해이다. 개인적으로 절충안에 동의한다.

회사가 정관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경우, 전자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현장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이사회가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⁴⁴⁾ 상법 제362조에서는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주주총회 역시 해당 조문을 근거로 하여 이사회가 정관의 규정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사회가 전자주주총회를 결정할 때 전자주주총회의 개최 관련 주요 사항들을 함께 결정하고 소집통지시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주총회 개최 URL, 본인확인 방법, 주주의 질문권 등 권리, 통신장애 등 사정

40) 윤영신, 앞의 논문, 100면; 권종호, 앞의 논문, 124면, 흥복기, 앞의 논문, 202면.

41) 송흥선 외 3인, 앞의 보고서, 61면.

42) 김성탁, 앞의 논문, 304-305면.

43) 김순석, 앞의 논문, 26면; 김신영, 앞의 논문, 62면; 윤영신, 앞의 논문, 85면.

44) 김성탁, 앞의 논문, 305면; 김순석, 앞의 논문, 26면.

변경시 대응방안 등 이후에 살펴볼 내용들을 이사회가 결정하고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법에 열거하기 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적절해 보인다.

다. 전자주주총회의 적용대상

전자주주총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대상회사를 모든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또는 상장회사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논의를 보면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로 보이고,⁴⁵⁾ 현재 발의되어 있는 입법안들도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 전자주주총회를 허용하고 있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운열 의원안도, 21대 국회에 발의된 김병욱 의원안과 조수진 의원안 모두 364조의2를 신설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법체계적으로 볼 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모두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되 법에서는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본점소재지나 규모, 주주의 구성 등 회사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상장이나 비상장이냐 여부로 전자주주총회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전자주주총회의 회의 진행 관련 쟁점

가. 본인 인증 수단

현장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명부에 기재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고, 전자투표의 경우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인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현행 상법상 현장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본인인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무상으로는 주주명부상의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송부된 주주총회 참석장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총회장 데스크에서 이를 확인한 후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참석장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주주 본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장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전자투표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본인인증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만을 인정하였으나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였다. 휴대폰, 아이핀, 신용카드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통해 주주임을 확인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시스템에서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하여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도 주주의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주임을 인증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최근 현장병행형(참가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삼성전자의 경우 총회일 전일 5시까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주주정보(주주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주주인증을 완료하면, 주주등록시 입력한 이메일로 주주총회 온라인 중계 시청 및 사전 질문페이지 입장 접속코드가 부여되고, 해당 주주가 당일

45) 김신영, 앞의 논문, 64면; 허원준, 앞의 논문, 209면.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전자주주총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김성탁, 앞의 논문, 304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접속하고 접속코드를 입력하면 주주로 확인되어 전자주주총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⁶⁾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에 별도의 주주인증에 대한 방법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행 전자투표의 방식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주 등의 자격확인 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자격 확인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굳이 법에서 주주확인 의무규정이나 방법을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⁴⁷⁾ 그러나 주주가 여러개의 회사에 투자할 경우 회사마다 개별적 인증수단을 확인하고 전자주주총회에 확인하는 것도 번거롭고, 주주들에게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당일에 온라인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인증수단을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모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에서도 주주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나. 주주의 질문권

상법에서 주주총회시 주주의 질문권이나 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주주는 당연히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질문할 수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⁴⁸⁾ 일본 회사법에서는 이사, 회계참여, 감사 및 집행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부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회사법 제314조). 우리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판례 역시 주주의 질문을 주주총회에서 통상적인 주주의 권리행사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2022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에 따르면, 1사당 평균 발언 주주수는 4.3명이고, 최대 발언 주주수는 20명으로 집계된다.⁴⁹⁾ 주주들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경영정책·영업정책에 대한 내용이 120개사, 주가관리가 90개사, 배당정책이 81개사, 임원보수가 54개사, 재무상황이 41개사 등이었다.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도 현장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주주의 질문권이 인정되어야 하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주주에게 사전에 관련된 공지를 하도록 실무지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성전자의 경우 3시간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주주들의 질문이 많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회사의 특성과 주주 구성에 따라 항상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자칫 악의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을 쏟아낼 수 있고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질의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두는 식의 실무적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⁰⁾ 주주총회 당일에 다루지 못한 주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은 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에라도 소개하고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⁵¹⁾

46) 김신영, 앞의 논문, 73면.

47)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5면; 윤영신, 앞의 논문, 94면.

48) 이철송, 앞의 책, 563면.

4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2년 상장회사 주주총회 백서」, 2022, 46-48면.

50) 김신영, 앞의 논문, 77면.

51)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0면.

다. 의장의 질서유지권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상법 제366조의2 제2항),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러한 의장의 질서유지권은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가상의 공간에서 주주의 발언을 어떻게 정지시키고 어떻게 퇴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강제로 중앙에서 접속을 끊거나 주주의 발언과 글자 입력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한편 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남용하여 주주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회사에게 유리한 내용만 채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의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지침을 만들고 사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주의 질문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전 질문을 받는 조치를 취하거나 질문의 내용이 의안과 관계가 없는 등 부득이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 이유와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주주의 질문에 대한 선별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며, 질의 응답의 내용은 일정기간 동안 주주총회 종료후에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의장이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합리적인 규칙이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⁵²⁾

라. 총회 검사인 및 공증인 업무

상법에서는 총회 검사인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회사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 선임된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7조). 만약 전자주주총회에 대해 총회 검사인이 선임되어 총회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그 적법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전자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고, 중요하게 총회 검사인이 검증해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공증인법에서 공증인이 의결장소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온라인 참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에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증인법에서는 의사록 공증을 하는 경우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검사결과와 의사록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도록 하고 있다(제66조의2 제3항 제1호). 또한 공증인의 경우 총회 의사록을 공증하여야 하는데, 의사록의 공증에는 출석주주의 확인 및 의결정족수의 확인도 포함되므로,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무에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52) 김순석, 앞의 논문, 29면.

(3) 전자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쟁점

가. 출석여부의 판단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하고 로그인 하는 것을 출석으로 로그아웃할 경우 퇴장으로 볼 수 있으나,⁵³⁾ 상법상 출석정족수는 중요하지 않고 의사정족수만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반드시 모든 의안에 대하여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결정족수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어야 가결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을 할 때 로그인을 한 상태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만 집계하면 될 것이다.

나. 현장 출석과 전자 출석

현장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접속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반대로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현장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것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현장 주주총회에서 퇴장조치를 취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접속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전자주주총회에서 접속을 끊고 현장 주주총회에 출석할 수도 있다.

의결권 이중행사가 발생한 때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 주주총회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되는가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게 할 수도 있고,⁵⁴⁾ 후에 행사한 의결권을 유효로 본다고 시행령 등에 명문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장 출석과 전자 출석의 문제는 전자출석과 사전 의결권 행사의 문제와도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므로, 후술한다.

다. 전자출석과 사전 의결권 행사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 할 때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나뉘고 있다.⁵⁵⁾ 프랑스의 경우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하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다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의결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행사한 의결권을 무효로 취급한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때서야 사전에 행사한 의결권을 무효로 취급한다.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가 전자주주총회에 다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통상적으로는 후에 행사한 의결권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항상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 출석하였을 때 이미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이전에 행사한 의결권을 무효로 할 것인지(독일, 일본식) 아니면 의결권을 행사할 때 결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사전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할 것인지(미국, 영국식)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53) 윤영신, 앞의 논문, 95면.

54) 윤영신, 앞의 논문 96면.

55)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7면.

라. 정족수 완화 문제

전자주주총회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 감사, 감사위원 선임시 의결정족수 완화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될 수 있는데,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를 달리 볼 이유는 없으므로 완화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상법 제409조 제3항에서는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상법 제409조 제3항에 추가하여야 하고, 만약 전자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 조문을 준용하여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특별한 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

(4)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설비 관련 쟁점

가. 쌍방향 송수신의 방법

전자주주총회를 위해 회사와 주주 사이에 ‘쌍방향성과 즉시성’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반드시 음성과 동영상을 동시에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동영상 전송의 경우 데이터 용량이 커서 통신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비용의 부담도 커질 뿐 아니라, 출석 주주의 상황이 전송되면 주주들의 초상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⁵⁶⁾

20대 국회에 발의된 최운열 의원안과 21대 국회에 발의된 조수진 의원안에서는 회사측과 주주측 모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원격영상회의로 정의하며,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전자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와 주주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전달하며 적시성 있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므로,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할 것인지 혹은 음성만 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⁵⁷⁾ 동영상과 음성이 결합되어 송수신된다면 보다 현장 주주총회에 가까워질 수 있으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할 때 외국의 입법례에서 음성만으로 참가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적어도 음성은 송수신 되어야 하고 채팅과 같이 문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의사교환은 주주총회에서 토론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⁵⁹⁾ 다만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하는 경우라면, 서버의 용량이나 출석 주주의 초상권 등에 대하여 확충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나. 통신장애시 대책

사전적으로도 통신장애를 대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나, 만약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중 통신 장애 등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통신 장애로 인하여 의안 설명이나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전자주주총회의 표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취소나 결의 부존재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

56) 김신영, 앞의 논문, 65면.

57)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3면.

58) 윤영신, 앞의 논문, 99면.

59) 정경영, 앞의 논문, 481면.

통신장애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 규정한 입법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독일 주식법 제243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전자주주총회의 가상 출석으로 행사될 권리가 기술적 장애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전자주주총회 실시 가이드라인에서 사전에 합리적인 대책을 정비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로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통신장애로 인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들이 전자주주총회를 채택하려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⁶⁰⁾ 독일처럼 명문의 규정을 두되 법률보다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적합해 보인다.

전자주주총회 개최 중에 통신 장애로 회의를 중단하고 이후 속행하여야 하거나, 개최 직전에 통신장애로 소집일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통신장애 등으로 정족수 확보가 곤란해지는 등 주주총회의 의사 진행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의취소를 떠나 주주총회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를 결정해야 한다.⁶¹⁾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는 총회에서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제372조 제1항), 통신 장애로 인해 주주로부터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전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에 주주들에게 총회 참석 전에 홈페이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변경된 일정의 공지방법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⁶²⁾

다. 전자주주총회관리기관

전자주주총회의 경우 특히 현장병행형(출석형)과 현장대체형의 경우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기술적 부분에 대한 전자투표관리기관의 책임 문제 등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는 “회사는 전자투표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주주 확인절차 등 의결권 행사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현재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절차적 번거로움과 비용 부담의 문제가 있으므로 전자투표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을 주주들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전자투표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전자주주총회 역시 회사가 전자주주총회관리기관에 서비스 제공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현재로서는 주주총회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 정보를 정리하고 플랫폼을 관리·개발하여 주주권 행사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전자주주총회를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라. 전자주주총회 기록 보관

전자주주총회에 관해서는 의사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주주총회 관련 분

60) 김신영, 앞의 논문, 69면.

61) 권용수, 앞의 보고서, 144면.

62) 김신영, 앞의 논문, 71면.

63) 윤승영, 앞의 논문, 107면.

쟁 발생시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존해 둘 필요성이 크다.⁶⁴⁾ 델라웨어주는 전자주주총회의 요건으로 주주의 원격통신을 위한 투표 및 기타의 행위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DGCL §211(a)(2)(iii)). 특히 주주들의 로그인 기록, 의결권 행사기록, 질문 기록 및 그에 대한 의장의 답변 등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주주총회 기록을 몇 년간 전자투표관리기관 또는 회사가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V. 나가며

우리나라의 주주총회는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고, 특히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새도보팅페지로 인한 기업들의 정족수 확보 노력 및 전자투표 활성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으로 인한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등으로 인해 형해화 되어 있던 주주총회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이다. 다만 주주총회를 ‘어떻게’ 개최하여야 할 것인지는 회사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회사와 주주가 원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주주총회 운영 및 주주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집절차의 전자화,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회의의 전자화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도입되었음에도 주주들의 개별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소집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시스템의 항목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의 경우,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주들이 원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회의의 전자화와 관련하여서는 먼저는 현장병행형(참가형)과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더불어 회의 진행, 의결권 행사, 설비 등 세부적인 규정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주주총회의 전자화 논의와 더불어 전자적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실버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021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29.8%를 60대 이상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고, 이런 주주의 고령화를 고려하여 일본은 일정 주주수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서면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서면투표 채택비율이 상당히 낮은 현실이다.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모두 투표의 방식에 대한 것인데 서면투표만 정관변경을 통해 채택이 가능하도록 한 점도 재검토하여, 다양한 주주의 구성에 맞게 의결권 행사 방법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향후 입법과제라 하겠다.

64) 김순석, 앞의 논문, 29-30면; 윤영신, 앞의 논문, 107-108면.

핀테크와 지급결제의 새로운 동향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신용 기반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BNPL)서비스에 대한 연구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서론

디지털금융의 확산으로 금융의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핀테크업체의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의 금융업법의 틀 안에서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금융업법이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업모델의 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와 법제도 사이의 시차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이 좌절되는 것을 막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라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가 시행되고 있고,¹⁾ 핀테크업체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²⁾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둘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지급 분야 금융서비스가 눈에 띄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금융업자(주로 간편결제업자라 불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에 허용되는 후불결제서비스로서 해외에서는 주로 ‘BNPL (Buy Now Pay Later)’로 불린다. 뒤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후불결제서비스는 소비자-판매상(가맹점)-후불결제업자의 세 당사자 사이에서 소비자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 당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그 대금을 후불결제업자에게 분할상환하며 가맹점은 후불결제업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후불형 지급수단이다.³⁾ 후불결제서비

- 1) 정순섭, “기술 발전과 금융규제”, 「BFL」 제85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7), 6면; 송창영·한채수, “금융규제샌드박스 사례”, 「BFL」 제107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1), 69-70면 등.
- 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약 26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그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여러 개정안 중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라 할 때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안을 가리킨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3) 지급수단은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고, 지급인의 자금부담시점에 따라 선불형, 직불형, 후불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지급업무는 지급수단을 통하여 지급을 실행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협의의 지급업무는 은행법상 은행이 예금을 지급수단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광의의 지급업무에는 은행법상 환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업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이체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통신과금 서비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 등이 포함된다[정순섭, 은행법 (지원출판사, 2017), 536-537면; 정순섭,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전과 지급결제법제”, 「BFL」 제9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7면 등]. 이와 같은 구분에 따를 때 후불결제서비스는 후불형 지급수단이자 광의의 지급업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불결제서비스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스는 신용카드업의 신용판매 기능과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외상’이라는 전통적인 상거래관행과도 흡사해 그 지급거래구조가 낫설지는 않을 것이다. 후불결제서비스는 북유럽, 호주 등에서 먼저 도입되어 미국, 영국 등에도 확산된 후 전세계적으로 고성장을 기록 중이다.⁴⁾ 후불결제서비스 시장은 초기에는 Klarna, Afterpay, Affirm과 같은 핀테크업체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점차 전통적인 금융회사나 빅테크기업도 그 시장에 관심을 보이며 속속 진출하고 있다.⁵⁾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에서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종래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로 등록한 소위 간편결제업자 등이 제한된 형태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후불결제서비스 시장에 대한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국내의 높은 신용카드보급률이나 신용카드회사의 다양한 마케팅전략 등을 들어 후불결제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자리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기존의 간편결제업자들 이외에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점차 후불결제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장에 참여하려 하고 있으며 최신 디지털기술로 무장한 후불결제서비스가 신용카드회사의 후불형 지급결제 기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⁶⁾ 이러한 전망과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탓에 아직 정식의 규제가 확립되지 않은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 본격적인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⁷⁾

이렇듯 국내 금융시장에서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외 금융당국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후불결제서비스의 개념·거래구조·시장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국내 금융법체계에서의 후불결제서비스의 법적 성질과 규제방향 등을 분석한다.

II. 후불결제서비스와 그 시장에 대한 개관: 해외의 상황을 중심으로

1. 개관

후불결제서비스는 호주, 영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서비스의 법적 성격이나 관련 시장에 대한 분석 역시 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호주, 영국, 미국 등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들의 사업모델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지급결제방법으로서의 후불결제서비스의 개념과 거래구조를 설명하고, 후불결제 시장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후불결제서비스의 시장 현황을 파악하며, 후불결제서비스

4)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1면; 이정은,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1면.

5)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2-3면.

6) 박태준/윤종문, “지급결제시장 구조 변화와 카드업 영향에 관한 고찰: 간편결제서비스 등장을 중심으로”, 「신용카드리뷰」 제14권 제4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0), 28면;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2면.

7) 이수환,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시 고려사항”, 「이슈와 논점」 제20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연합뉴스 기사, “후불결제 서비스는 연체해도 신용점수 안 떨어진다?” (2023. 1. 23.); 연합뉴스 기사, “핀테크 업계, 후불결제 연체증가에 고심...‘연체정보 공유해 달라’” (2023. 1. 24.); 디지털타임스 기사, “토스 등 후불결제 연체 급속 증가” (2023. 1. 24.) 등.

의 장점과 단점 등을 검토한다.

2. 후불결제서비스의 개념

해외의 주요 후불결제업자들은 자신들이 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의 기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각 업체마다 사업모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 통일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요 후불결제업자의 사업모델을 분석해 보면, 후불결제서비스는 대체로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을 구매 이후 일정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누어 지급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형 지급결제의 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⁸⁾ 이와 같은 정의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선 후불결제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맹점, 후불결제업체, 이렇게 세 개의 당사자를 포함한다.⁹⁾ 소비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그 구매대금을 가맹점이 아닌 후불결제업체에 구매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한다.¹⁰⁾ 이처럼 소비자가 구매대금을 구매시점 이후에 분할로 상환하더라도 후불결제업자는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용통에 따른 수수료 내지 이자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¹¹⁾ 다만 소비자가 약정된 분할지급기일에 분할대금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후불결제업자는 소비자에 소정의 연체 수수료를 부과한다.¹²⁾ 소비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한 후불결제업자는 그에 따른 판매대금을 후불결제업자로부터 지급받는데, 이 때 후불결제업자는 원래의 판매대금에서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한다.¹³⁾ 이처럼 후불결제서비스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을 구매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도 원칙적으로 후불에 따른 이자 또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는 ‘무이자’의 신용 기반 지급결제상품으로서 후불결제업자는 주로 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와 소비자가 대금의 분할지급을 연체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를 주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

3. 국가별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각국의 후불결제서비스 거래구조 비교

호주, 미국, 영국의 주요 후불결제업자들은 각국의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기존 규제를 직

8)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9) 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6.

10)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6;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7, 26.

11)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7.

12)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7.

13)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6;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10.

14)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3.

용받지 않도록 거래구조를 설계하여 세부 거래조건에서는 다소간 차이를 보인다.

호주의 경우,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National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적용을 받으면 여신업자 인가(credit license)를 받아야 하고 책임 있는 대출의무(responsible lending obligation)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상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면 그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¹⁵⁾ 구체적으로 ① 소비자에 신용을 공여하는 것에 대하여 이자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¹⁶⁾ ② 신용공여기간이 62일 이하이고 그에 대한 수수료가 신용공여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자가 연 24%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③ 계정개설수수료나 계정유지수수료와 같이 일정 금액 이하의 고정금액 수수료만 부과되는 경우,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대부분의 후불결제업자는 위 면제요건 중 ① 또는 ③의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상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¹⁷⁾ 호주의 후불결제업자 중 Afterpay와 Oxipay는 신용공여에 따른 이자 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위 ①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고, zipMoney, Certegy, Openpay 그리고 Brighte는 위 ③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¹⁸⁾ 후불결제서비스의 신용구매한도의 경우 Afterpay, zipMoney, Oxipay는 1000-2000호주달러까지 제공하고, Openpay는 17,500호주달러까지 제공하며, Brighte와 Certegy는 30,000호주달러까지 제공한다고 한다.¹⁹⁾ 분할상환조건의 경우, Afterpay와 Oxipay는 총 6-8주에 걸쳐 매주 또는 2주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Openpay는 2-36개월에 걸쳐 세 번의 분할 상환 옵션을 제공하며, Certegy와 Brighte는 2-60개월의 상환기간을 제공한다고 한다.²⁰⁾ 소비자의 분할 상환 연체시 부과되는 연체 수수료 금액은 4.99호주달러부터 15호주달러에 이르는 고정금액이 대부분이라 한다.²¹⁾ 상환방법의 경우, 소비자가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 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계좌이체와 직불카드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한다.²²⁾

미국의 경우 후불결제업자가 대출진실법(Truth in Lending Act)과 Regulation Z의 규제를 받지 않도록,²³⁾ 대부분의 후불결제서비스가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대금에 대한 분할상환 횟수를 4회 이내로 하고, 소비자에게 신용공여에 따른 수수료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으며, 신용카드를 수반하지 않고, 구매시 지급하는 1회 분할대금을 총 구매대금의 25%로 하고 나머지 3회의 분할대금을 각 2주간 간격으로 상환하도록 설계된다.²⁴⁾ 후불결제서비스를 통해 융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금은 50-1000달러 정도이고, 구매 당시에는 이자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소비자가 분할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대략 7달러 정도의 연체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한다.²⁵⁾

15)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5.

16) 소비자가 구매 후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부과하는 연체 수수료는 여기서 말하는 이자 또는 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불결제업자가 (자금융통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내지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한) 소비자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위 면제요건에 해당한다.

17)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7.

18)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8.

19)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8.

20)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8.

21)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8.

22)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31.

23) 15 U.S.C. § 1602(g); 12 C.F.R. § 1026.2(17).

24)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 최민지, “2022년 글로벌 지급결제 주요 트렌드 및 전망”, 「해외여신금융동향」 2022-1 (여신금융연구소, 2022), 4면.

25)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

영국의 경우 신용공여계약이 소비자신용법이나 금융행위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²⁶⁾ 그 규정에 따라 후불결제서비스가 “① 소비자-후불결제업자-가맹점 사이 고정금액의 신용공여를 위한 약정일 것, ② 소비자에 의한 분할상환횟수가 12회 이하일 것, ③ 분할상환기간이 12개월 이하일 것, ④ 이자 또는 수수료 없는 신용공여일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비자신용법이나 금융행위청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므로, 영국에서의 후불결제서비스는 대부분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²⁷⁾ 영국에서 영업을 하는 주요 후불결제업자의 분할상환조건을 보면, Clearpay는 4회에 걸쳐 각 2주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Klarna는 3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거나 3회에 걸쳐 각 1달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LayBuy는 6회에 걸쳐 각 1주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Openpay는 3-7회에 걸쳐 각 1달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하며 Paypal은 3회에 걸쳐 각 1달 간격으로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²⁸⁾ 연체수수료는 대체로 6파운드에서 36파운드 사이에 걸쳐 있다.²⁹⁾

4. 후불결제서비스 시장의 현황

호주의 경우 Certegy가 처음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약 20여 년이 지났는데,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5-2016년 40만 명 정도에서 2017-2018년 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후불결제 건수도 2016년 4월 51,000건 정도에서 2018년 6월 190만 건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월별 총 거래금액은 2016년 4월 5,600만 호주달러에서 2018년 6월 3억 3억 4,600만 호주달러로 증가하였다.³⁰⁾ 또한 후불결제에 따른 소비자 분할상환채무 총잔액은 2016년 4억 7,600만 호주달러에서 2018년 6월 9억 3백만 호주달러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후불결제서비스 가맹점 수 역시 Afterpay의 예를 보면 2016년 6월 대비 2018년 6월에 45배 이상으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³¹⁾ 호주에서 후불결제서비스는 온오프라인을 망라하여 활용되지만 온라인을 통한 활용비율이 62%로 더 높았고,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60% 정도가 18-34세의 연령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44% 정도는 연소득이 40,000호주달러 이하였다.³²⁾ 이와 비교하여, 신용카드 보유자는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신용카드 보유자의 단 14% 정도만이 41,599호주달러 미만의 연소득을 기록했다.³³⁾

미국의 경우 주요 5개 업체의 후불결제서비스를 통한 거래금액이 2020년 83억 달러에서 2021년 242억 달러로 세 배 정도 증가했다.³⁴⁾ 후불결제서비스 이용대상 품목의 경우 서비스 초기에는 의류와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이와 대조적으로 가스,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³⁵⁾ 거래단위당 거

26) Article 60F(2) of th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Order 2001.

27)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5.

28)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5.

29)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5.

30)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9, 17.

31)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9, 17.

32)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22-27.

33)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22-27.

34)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0.

래금액 대비 마진율은 2020년 1.27%에서 2021년 1.01%로 하락했는데, 그 원인은 신용손실(credit losses)의 증가와 경쟁심화로 인한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 및 자금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파악된다.³⁶⁾ 이러한 마진율 하락에 대응하여 후불결제업자들은 거래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 명목을 신설하거나 늘리며, 사업모델을 기존의 가맹점 파트너 획득 모델(merchant partner acquisition model)에서 애플리케이션 주도의 획득 모델(app-driven acquisition model)로 변경하는 전략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³⁷⁾

영국의 경우 일부 후불결제업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에 의하면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해 본 영국 소비자는 약 500만 명으로서 전체 소비자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자의 연령대로는 18-24세인 이용자가 25%를 25-36세인 이용자가 50%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이용자의 75% 정도가 여성이었고, 대상품목으로는 의류와 신발 품목이 90% 정도를 차지했다.³⁸⁾ 후불결제서비스에 의한 여신 취급 규모는 27억 파운드로서 전통적인 소비자신용상품에 의한 여신 취급 규모에 비해 많이 작지만 그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³⁹⁾

5. 후불결제서비스의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

후불결제서비스는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업체의 혁신적 간편결제서비스 중 하나로서 흔히 “비용이 들지 않고 심리스를 특징으로 한(free and seamless) 비즈니스모델”로 묘사된다.⁴⁰⁾ 이러한 표현에 후불결제서비스의 장점이 압축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후불결제서비스는 우선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그 대금지급을 유예받고 대금지급시기와 방법을 유연화하는 데 대하여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다른 신용결제수단과 비교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⁴¹⁾ 신용카드 등과 비교할 때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채무상환능력 내지 지급능력에 대한 심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간략하게 이루어짐에도,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 중 소비자의 연체 수수료가 발생한 거래의 비율은 호주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 9-14%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일정했고 같은 기간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 중 74%는 한 번도 연체를 기록한 경험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2021년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중 10.5% 정도만이 최소 한번 이상 연체수수료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35)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0.

36)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0.

37)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0.

38)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5;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4.

39)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5;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4.

40)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0.

41)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7;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4;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6;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1-62.

이를 보면 (연체 수수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위와 같은 장점에 더하여, 주요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간편결제서비스 중 하나인 후불결제서비스는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며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⁴³⁾ 후불결제업자의 사업모델은 크게 가맹점 파트너 획득 모델(merchant partner acquisition model)과 애플리케이션 주도 획득 모델(app-driven acquisition model)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전자의 모델에서는 온라인쇼핑몰 등 가맹점의 웹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쇼핑을 완료하는 화면(checkout)에 지급결제수단으로 임베드되어 있는 후불결제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⁴⁴⁾ 후자의 모델에서는 후불결제업자 자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 소비자 각각에게 제공되는 신용구매 한도액을 확인하고 신용구매를 승인받은 후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연결되는 다양한 쇼핑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쇼핑을 하고 후불결제서비스로 결제를 하면 된다.⁴⁵⁾ 이와 같은 심리스(seamless)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경험(ux) 편의성은 후불결제서비스의 여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의 후불결제서비스 신청(승인 요청) 단계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나 여신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절차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소비자에게 입력을 요구하는 정보가 매우 적고 신청절차 또한 단순하다.⁴⁶⁾ 후불결제업자의 승인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과거 당해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체한 기록이 있는지 정도만을 확인하는 등 그 심사가 단순하고, 승인 여부 결정이 승인 요청 즉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승인 비율 역시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비교할 때 월등히 높다.⁴⁷⁾ 소비자가 대금을 분할 상환하는 단계에서도 상환구조나 상환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쉽다.⁴⁸⁾

이에 반해 후불결제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소비자의 과도한 채무부담과 그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악화를 들 수 있다. 앞에서 본 후불결제서비스의 장점인 ‘비용이 안 든다는 점’과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의 결정적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많은 소비자들은 무비용·무이자로 홍보되는 후불결제서비스 덕분에 그 서비스가 없었다면 구매자금 부족이나 결제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하여 구매를 주저하였을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구매를 과감히 결정하게 되고 비마찰식(frictionless) 결제방식이 가져다주는 결제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손쉽게 소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⁹⁾ 더욱이 어떤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분할대금 지급을 연체하더라도 후불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거나 다른 후불결제업자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A라는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분할

42)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32;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9.

43)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3.

44)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2.

45)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4.

46)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5, 63: 보통 소비자가 입력하는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정도에 불과하다.

47)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3, 15, 35;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3.

48)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6;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3.

49)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4.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어떤 소비자가 그 업자로부터 후불결제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거절당한 후 B라는 다른 후불결제업자에 접근하더라도 B는 그 소비자의 A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연체 및 승인거절 기록을 모른 채 그 소비자의 후불결제서비스 신청을 승인하게 된다.⁵⁰⁾ 이런 식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가 여러 후불결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과도한 채무부담 문제로 인하여 해당 소비자의 금융스트레스(financial stress)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후불형 지급결제시장 전체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많은 후불결제업자들의 신용구매 한도 증액에 관한 정책도 과도한 채무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즉, 많은 후불결제업자들은 후불결제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도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일정한 금액(예를 들어 호주의 Afterpay의 경우 600호주달러가 초기 상한금액이라고 한다)을 한도로 한 구매신용을 공여하는데 소비자가 연체 없이 후불결제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수록 그 상한금액을 점차 늘려준다.⁵¹⁾ 이처럼 신용구매 한도 증액이 소비자의 재무상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실적 등을 기초로 이루어지다보니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신용구매 한도를 일단 늘려서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에 맞지 않는 소비를 늘림으로써 과도한 채무부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금융에 디지털 신기술을 결합한 후불결제업자들은 빅테크 플랫폼과 비슷하게 소비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 가능성을 늘리고 소비자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그 데이터에 기반한 사업모델과 마케팅전략을 수립한다.⁵²⁾ 이러한 사업운영방식 역시 소비자의 과도한 후불결제서비스 사용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과도한 채무부담의 위험에 기여하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소비자의 경우 실제 금융스트레스 지수가 올랐고 후불결제서비스의 분할대금 상환채무 이행을 위해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거나 다른 고비용의 여신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한다.⁵³⁾

6.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해외 주요 금융당국의 규제논의

6.1. 호주

6.1.1.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호주에서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업자는 같은 법상 책임 있는 대출의무(responsible lending obligation)의 적용을 받아 소정의 심사를 통해 소비자의 재무상태를 질문·검증하고 소비자가 상당한 어려움 없이 신용공여금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⁵⁴⁾ 그러나 앞서도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후불결제업자들은 위 법의 적용

50)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3;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65.

51)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12;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19.

52)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4.

53)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11-12.

54)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3, 15, 35.

을 받지 않아 소비자에게 후불결제서비스를 승인함에 있어 해당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없고 그로 인하여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소비자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후불결제업자도 책임 있는 대출의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⁵⁾ 후불결제업자에 책임 있는 대출의무가 적용될 경우, 후불결제업자는 소비자의 현재 소득금액, 생활비, 자산, 부채, 나이, 거주지역, 예상되는 채무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된다.⁵⁶⁾

그리고 호주증권투자위원회는 동 위원회의 상품 개입 권한(product intervention power)이 후불결제서비스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동 위원회가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후불결제업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적이거나 비양심적인 행위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시킬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⁵⁷⁾

구체적으로 호주증권위원회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일부가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분할대금의 상환조건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도 그러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잘 알지 못하며,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재무적 곤란 상태(financial hardship)에 처했을 때 후불결제업자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인식하여, 후불결제업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다: ① 소비자들이 후불결제서비스의 조건을 적절히 이해하도록 할 것, ② 소비자 불만(민원)처리절차가 쉽게 확인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소비자가 후불결제업자에게 재무적 곤란 상태에 대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할 것 등.⁵⁸⁾

6.1.2. 호주 재무부

호주 재무부는 후불결제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후불결제서비스 승인 절차, ② 미흡한 소비자 불만 처리 절차 및 재무적 곤란 상태에 처한 소비자에 대한 불충분한 원조, ③ 소비자의 채무 규모 대비 과도한 연체 수수료, ④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달리 호주 신용보고(credit reporting) 체계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후불결제업자들 사이에 소비자의 신용정보가 공유되지 못하는 현상, ⑤ 후불결제서비스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공시, ⑥ 소비자가 가맹점 웹사이트에서 체크아웃할 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접해야 하는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불초청 광고, ⑦ 비마찰식(frictionless) 사용방식으로 인한 후불결제서비스 오남용 가능성, ⑧ 후불결제서비스로 구매된 물품이 반환될 때 부적절한 수수료 부과 문제 등.⁵⁹⁾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호주 재무부는 (i) 자율규제방식으로서 위 문제를 다루는 후

55)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6;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3면.

56) ASIC, “Regulatory Guide 209: Credit Licensing—Responsible Lending Conduct”

57) Div. 2 of Pt. 2 of the ASIC Act;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5; 장명현, “호주의 ‘Buy Now Pay Later’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규제 정비 움직임”, 「해외여신금융동향」 2020-2 (여신금융연구소, 2020), 3면; 이정은,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5면.

58) ASIC, “Report 600: Review of Buy Now Pay Later Arrangements” (2018), p. 14.

59)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5.

불결제서비스 산업 규약(BNPL Industry Code)을 강화하는 방안, (ii)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상의 책임 있는 대출의무를 후불결제서비스에 맞게 다소 변형하여 적용하는 등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상의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iii)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상의 책임 있는 대출 의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규제 옵션으로 제안하였다.⁶⁰⁾ 특히 위 옵션 중 가장 강력한 (iii)의 규제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소비자신용보호법을 개정하여 후불결제업자도 여신업자 인가(credit license)를 받도록 하고 책임 있는 대출 의무를 후불결제업자에도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⁶¹⁾ 따라서 후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 대한 소정의 질문·검증·평가를 통해 그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적합할 경우에만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⁶²⁾ 또한 소비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소비자의 신용구매 한도를 늘리는 것은 금지되고,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공시요건이 강화될 것이며, 연체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제한할 것이고, 소비자의 상환 이력과 재무적 곤란 상태 등에 관한 정보 등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신용보고체계가 강화될 것이다.⁶³⁾

6.2.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신용공여상품은 여신업자로 하여금 신용공여상품의 조건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대출진실법과 Regulation Z의 적용을 받는다.⁶⁴⁾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정보에는 신용공여금액, 분할상환횟수, 수수료, 연이율, 연체이자 등이 포함된다.⁶⁵⁾ 그런데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대출진실법과 Regulation Z의 적용을 받지 않아 위와 같은 공시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소비자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속성과 상환조건 및 연체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여신규제의 핵심원칙인 투명성 원칙에 반한다.⁶⁶⁾

신용카드나 다른 신용공여상품의 경우 Regulation Z에 따라 소비자가 청구서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소비자와 여신업자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소비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소비자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⁶⁷⁾ 그러나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에는 위 Regulation Z의 분쟁해결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와 후불결제업자 사이의 분쟁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소비자는 분할대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⁶⁸⁾

60)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5;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4면.

61)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22.

6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22.

63)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Regulating Buy Now, Pay Later in Australia: Options Paper” (2022), p. 22.

64)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2.

65) Regulation Z, 12 C.F.R 1026.18.

66)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2-73.

67)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3.

68)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3.

미국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s Transfer Act) 및 Regulation E가 여신업자에게 소비자로서 하여금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여신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미국 연방법은 소비자에게 여신채무를 갚을지 여부 및 어떻게 갚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⁶⁹⁾ 그런데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후불결제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좌자동이체나 신용카드 등을 통한 자동결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소비자가 자동결제를 철회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기도 한다.⁷⁰⁾ 이처럼 자동결제를 사실상 강요하는 관행은 소비자가 상환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 또는 다른 금융채무를 우선 상환하기 위해 후불결제 분할상환채무를 일단 건너뛴 수도 있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⁷¹⁾

Regulation Z는 신용카드업자가 소비자의 동일한 연체카드대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중복하여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multiple late fees for the same missed payment)을 금지하고, 신용카드 책임 및 공시법(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⁷²⁾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후불결제업자는 동일한 연체 분할대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중복하여 연체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후불결제업자들이 거래당 마진을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공격적인 연체 수수료 전략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러한 연체 수수료 관행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⁷³⁾

후불결제업자의 사용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data harvesting)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안 등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영업은 반복적인 사용을 부추김으로써 소비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⁷⁴⁾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달리 어떤 소비자의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연체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는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연체 이력을 신용보고기관에 보고하거나 다른 후불결제업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점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채무상환능력이 없어서 어떤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복수의 후불결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부작용(이를 'loan stacking'이라 한다)이 발생할 우려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에도 채무상환 이력을 신용보고기관에 보고하고 후불결제업자들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⁷⁵⁾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은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도 신용카드업에 대하여 기존에 확립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적용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⁷⁶⁾

69)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3.

70)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4.

71)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4.

72)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4-75.

73)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4.

74)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4;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융센터 Brief」 (2022), 3면.

75) CFPB, “Buy Now, Pay Later: Market Trends and Consumer Impacts” (2022), p. 77;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3면.

76) Mayer Brown, “CFPB Releases Long-Awaited Report on Buy Now Pay Later Industry” (2022), p. 5-6; 구태영/이상원, “전세계 BNPL 산업의 성장과 미래”, 「국제금

6.3. 영국

6.3.1. 영국 금융행위청(FCA)

영국 금융행위청은 후불결제서비스도 소비자신용(consumer credit) 관련 기존의 규제 체계에 포함되어 금융행위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⁷⁷⁾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후불결제서비스가 온라인상으로 사용될 때 여러 지급결제수단 중 우선적인 지급결제수단으로 표시되거나 다른 지급결제수단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⁷⁸⁾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20년 7월에 발효된 스웨덴의 이커머스 지급수단법(E-Commerce Payments Bill)은 지급결제수단 중 후불결제서비스와 같은 신용결제수단이 직불형 지급수단보다 먼저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후불결제업자들은 소비자의 상환 이력을 신용조회기관(Credit Reference Agencies)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 후불결제업자에 대하여 연체를 기록 중인 소비자가 다른 후불결제업자를 통해 추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많은 후불결제업자들은 당해 후불결제서비스의 사용 이력만을 확인한 채 서비스를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⁷⁹⁾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불결제업자들이 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의 신용위험과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후불결제업자의 주된 수입원은 가맹점으로부터의 가맹점 수수료이지만, 소비자로부터의 연체 수수료 수입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연체 수수료의 상한 등에 대한 규제가 없고 일부 후불결제업자들은 전체 수입 중 연체 수수료의 비중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⁸⁰⁾

후불결제서비스의 사용이 온라인 중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되고 있는데, 후불결제업자와 가맹점은 오프라인에서 가맹점 직원이 소비자에게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장려하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⁸¹⁾

6.3.2. 영국 재무부

용센터 Brief」 (2022), 3면; 임운화, “BNPL 급성장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와 해외주요국 규제 동향”, 「해외여신금융동향」 2022-12 (여신금융연구소, 2022), 4면.

77) 김민정, “글로벌 결제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 트렌드 변화”, 「여신금융」 2022년 여름호 (여신금융협회, 2022), 120면; 이정은,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4면.

78)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8.

79)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8-50.

80)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49-50.

81) FCA, “The Woolard Review-A Review of Change and Innovation in the Unsecured Credit Market” (2021), p. 50.

영국 정부는 후불결제서비스를 규제할 의도를 밝히면서도,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비교할 때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자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후불결제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물품구매시 그 대금지급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위험 수준에 맞는 균형있고 비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⁸²⁾ 그리고 그와 같은 균형있고 비례적인 규제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① 후불결제서비스는 그것이 야기하는 위험의 정도에 비례적인 개입 정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 개입이 지급결제수단 결정에 있어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감소시키거나 후불결제서비스의 제공을 금지시킬 정도로 부담스러운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② 소비자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후불결제업자를 상대로 한 분쟁해결절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신용시장이나 지급결제수단시장 전반에 걸친 경쟁과 혁신에 불리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④ 후불결제수단을 지급결제수단의 옵션 중 하나로 제공하는 가맹점에 대한 부담은 비례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대규모 가맹점에 비해 중소규모 가맹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⁸³⁾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신용공여상품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인이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신용공여상품을 이용하도록 하려면 그 상인은 영국 금융행위청으로부터 여신증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된 금융행위청 규정이나 소비자신용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⁸⁴⁾ 현재는 후불결제서비스가 금융행위청의 규제나 소비자신용법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고 있어서 후불결제서비스의 가맹점이 소비자로 하여금 후불결제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더라도 여신증개업 규제를 받지 않는데 만약 후불결제서비스가 금융행위청의 규제를 받을 경우 후불결제서비스 가맹점도 금융행위청으로부터 여신증개업 규제를 받을 수 있다.⁸⁵⁾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가맹점이 지급결제수단의 옵션 중 후불결제서비스를 배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지급결제수단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불결제서비스에 기존의 다른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가맹점에 대한 신용증개업 규제는 면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⁸⁶⁾

소비자신용법 제55조는 기존의 규제대상인 신용공여상품에 대하여 계약체결 전 여신업자가 소비자를 위하여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이자로서 위험이 낮고, 온라인상에서 비교적 낮은 금액의 물품과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잦은 빈도로 사용되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특성상 소비자가 장황하고 자세한 정보 공개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신용법 제55조의 경직되고 장황한 계약 전 정보공개의무를 후불결제서비스에 전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⁸⁷⁾ 대신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는, 어떤 신용공여상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가 그 상품이 자신의 필요와 재무상태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여신업자에게 계약 전 적절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금융행위청 규정 정도로 충분할 것이다.⁸⁸⁾ 계약 전 정보 공개 의무를 자세히 규정하는 소비자신용법 제55조를 후불결제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신용공여상품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을 자세히 규정하는 소

82)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7.

83)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7.

84)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16.

85)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17.

86)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17.

87)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0.

88)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0-21.

비자신용법 제60조와 다른 관련 규정을 후불결제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의 형식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⁸⁹⁾

소비자신용법 제61조는 기존의 규제대상인 신용공여상품에 대하여 유효한 계약 체결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계약서에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후불결제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⁹⁰⁾ 다만 그와 같은 계약체결방식을 후불결제서비스에도 요구할 경우 후불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비마찰식 거래로 인한 사용자 편의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⁹¹⁾

금융행위청 규제를 받는 다른 신용공여상품을 제공할 때에는 여신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그 여신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데, 금융행위청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여신감당능력을 평가할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⁹²⁾ 그러나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에도 책임 있는 대출 관행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여신감당능력 평가에 관한 금융행위청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여신감당능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상환 이력을 신용조회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⁹³⁾

현재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재무적 곤란 상태에 빠지거나 연체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소비자를 어떻게 원조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⁹⁴⁾

기존의 규제대상인 신용공여상품의 경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불만처리기구인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통해 여신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일관되고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 내지 소비자불만처리절차가 부족한 상황이다.⁹⁵⁾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에도 일관되고 독립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보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⁹⁶⁾

III. 국내의 후불결제서비스와 그에 대한 규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1. 소액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1. 개요

금융위원회는 2021. 2. 9.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과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는데, 디지털금융 신사업의 일종으로서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⁹⁷⁾ 그에 이어 아

89)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1.

90)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2.

91)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2.

92)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2.

93)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2-23.

94)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3-24.

95)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7.

96) 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27.

9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 (2021. 2. 9.)

래와 같이 국내 핀테크업체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1.2.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1.2.1. 주식회사 비바리퍼블리카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① 주요 내용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결제 부족분에 대하여 월 3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이다.⁹⁸⁾

이용자의 범위를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고, 1인당 후불결제 한도를 최대 30만 원까지로 제한하며,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한다.⁹⁹⁾ 구매품목의 범위를 제한하여, 환급성 상품(귀금속, 상품권 등)과 유흥·사행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¹⁰⁰⁾ 소비자가 연체할 경우에는 후불결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¹⁰¹⁾ 신용카드와 구별하기 위해, ‘신용’,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결제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을 할 수 없다.¹⁰²⁾

② 기존 규제에 대비한 특례 내용

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음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가 후불결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원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개념과 기능상 후불결제 업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었다.¹⁰³⁾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위해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¹⁰⁴⁾

한편, 후불결제 서비스는 신용카드라는 실물 증표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

9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2호, “(주)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11. 12.)

9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2호, “(주)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11. 12.)

10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2호, “(주)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11. 12.)

10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2호, “(주)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11. 12.)

10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52호, “(주)비바리퍼블리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11. 12.)

1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021. 2. 18.)

104)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021. 2. 18.)

면 신용에 기반한 후불결제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신용카드업자의 고유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데 신용카드가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한 후불결제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¹⁰⁵⁾

위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위 소액 후불결제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서 특례를 부여
받은 것이다.

1.2.2. 주식회사 카카오페이

① 주요 내용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선불전자지급수단(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소진 이후 탑승한
만큼 후불로 청구되는 방식의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이다.

이용자의 범위를 19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고, 1인당 후불결제 한도를 최대 15만 원까지
제한하며,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별 한도를 차등 부여한다.¹⁰⁶⁾ 구매품목 범
위도 제한하여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택시), 톨게이트(하이패스), 주차장 외 다른 업종은 후
불로 구매할 수 없도록 한다.¹⁰⁷⁾ 소비자가 연체할 경우에는 후불결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은 제한된다.¹⁰⁸⁾ 신용카드와 구별하기 위해, ‘신용’, ‘신용카드’ 등 신
용카드 결제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할부·리볼빙·현금서비스 등을 할
수 없다.¹⁰⁹⁾

② 기존 규제에 대비한 특례 내용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본질적으로 위에서 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와 흡사
한바,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으로써 적용한 특례내용
역시 위에서 본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에 대한 특례내용과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는 않는다.

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후불결제서비스

2020년부터 의원 발의 형태로 다수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 그에
관한 입법 논의가 아직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¹¹⁰⁾ 각 개정안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조
금씩 다르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는 대체로 전자금융업의 인가 단
위를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종합지급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는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종래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되던 후불결제서비스를 전자
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정식 편입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아직 학계의 본격적인 논의

10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1.2.18.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021. 2. 18.)

106)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5호, “(주)카카오페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5. 26.)

10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5호, “(주)카카오페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5. 26.)

108)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5호, “(주)카카오페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5. 26.)

10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85호, “(주)카카오페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5. 26.)

1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6건 정도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
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검토해 볼 점이 적지 않다. 이 장에서는 일단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05855, 이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라 함)을 중심으로 후불결제서비스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입법체계 및 규제방향 등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우선 후불결제서비스를 대금결제업자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취지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기반 하에 대금결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좌 기반의 선불·직불결제 서비스를 보완하는 신용 기반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함”에 있다고 한다.¹¹¹⁾

구체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된 제35조 제1항 제2호는 대금결제업자 등의 겸영업무로서의 후불결제업무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제35조 제3항 각호는 대금결제업자가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 요건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이용자 본인이 신청할 것, 2. 제1호에 따른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일 것, 3.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업무에 따른 한도액이 대금결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결제한도를 넘지 않을 것, 4. 그 밖에 후불결제업무의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제35조 제4항은 대금결제업자가 제3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인결제한도를 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이용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것.

제35조 제6항은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행위제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용자에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스스로 신용을 공여한 것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지연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3.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IV.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입법체계와 규제방향

1. 문제의 소재

디지털기술 발전에 기반하여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핀테크업체 등 새로운 금융시장 참가자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수신, 여신, 투자, 지급, 위험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의 각 기능에서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금융사업모델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수요에 의해 시장에 등장하여 그 중 상당수는 소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불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으로써 합법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기존 규제법령에 대한 개정수요도 촉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혁신금융서비스의 등장은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장점은 분명 있지만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의 경쟁상

1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원문, 8면.

불이익과 기존의 상품별·기관별 규제에서 비롯된 규제상 공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다.¹¹²⁾

앞서 본 후불결제서비스 역시 디지털금융의 환경에서 간편지급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핀테크업체의 대표적인 사업모델 중 하나로서 국내에서도 혁신금융서비스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대부분의 새로운 사업모델과 마찬가지로 후불결제서비스도 그에 대한 정규 규제체계를 어떻게 정립할지가 문제되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 중 하나인 대금결제업자의 겸영업무 중 하나로 편입하는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체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그 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금융상품의 법적 성질 내지 법적 지위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¹¹³⁾ 후불결제서비스를 대금결제업자의 겸영업무 중 하나로 신설하는 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후불결제서비스의 법적 성질 내지 법적 지위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검토과정을 거친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그 유용성이 확인된 기능별 규제원칙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법 전반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고 지급이나 여신 분야에서도 기능별 규제원칙에 입각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나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¹¹⁴⁾ 이러한 배경 속에서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금융규제 분야 입법 논의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제적 기능과 법적 성질

전통적인 금융의 기능을 예금(수신), 신용공여(여신), 투자, 위험관리, 비현금성 지급 등으로 분류할 때, 후불결제서비스의 경우 그 경제적 기능의 실질에 비추어 금융법상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지만 국내외 각종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성 상품과 유사하다는 견해, 신용카드와 유사한 실질이 있으나 기존의 통신과금 서비스를 대체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으로 취급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견해, 전자금융거래법상 개정안과 같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가 선불금 부족시 제한적으로 후불결제를 할 수 있는 형태라면 결제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 등을 확인할 수 있다.¹¹⁵⁾ 그런데 아래

112) 정순섭, “디지털금융혁신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과제”, 「여신금융」 2020년 가을호 (여신금융협회, 2020), 5면.

113) 정순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9. 30.), 115면.

114) 정순섭, “디지털금융혁신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과제”, 「여신금융」 2020년 가을호 (여신금융협회, 2020), 6면.

115) 이수환, “전자금융업자의 후불결제 규제시 고려사항-소비자 보호 및 부채 관리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제200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2면; 이준희,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1), 39-40면;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업감독국(Department of Business Oversight)은 후불결제업자에 대하여 대출(loan) 관련 인가(license)를 받지 않고 금융대출업을 영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회피하는 부당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였는데[이정은, “해외 BNPL 시장 동향 및 감독당국의 대응”, 「자본시장포커스」 2021-05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5면], 이러한 결론은 후불결제서비스의 성격을 대출(loan)로 보았음을 전제로 할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 개념과 비교해 보면, 후불결제서비스는 여신의 기능과 지급의 기능이 결합 내지 혼합된 신용 기반의 후불형 지급수단으로서, 기존의 신용카드와 가장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해외에서의 주요 후불결제업자의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할 때 후불결제 서비스는 소비자-후불결제업자-가맹점의 세 당사자 사이에서 소비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한 후 그 구매대금을 후불결제업자에게 일정 기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누어 지급하고 후불결제업자는 자신의 신용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되 소정의 가맹점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구조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거래구조는 기존의 신용카드와 상당히 유사한데, 신용카드라는 증표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금을 분할로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뒤로 연기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¹¹⁶⁾ 등을 차이점으로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거래구조의 차이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후불결제서비스는 핀테크업체의 지급 분야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소비자에 대하여 후불결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소비자의 신용구매한도를 설정하는 과정 등에서 최첨단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금융기법이 적용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위 사업모델은 속칭 ‘외상’이라는 불리는 상거래 지급관행과도 유사한 모습을 띠는데, 외상은 소비자-판매상의 양 당사자 지급구조로서 후불결제업자나 신용카드업자와 같은 제3의 신용제공자를 포함하는 세 당사자 지급구조와는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최근 국내에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한 사례로 ‘나중결제서비스’를 들기도 하는데 나중결제서비스는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대금을 나중에 지급받는 일종의 외상판매¹¹⁷⁾로서 제3자의 신용제공자가 관여하는 후불결제서비스와는 명백히 구분되며 금융규제상 인허가를 요하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도 없다.¹¹⁸⁾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후불결제를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로 정의하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에 대한 정의¹¹⁹⁾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할부금융이 많이 활

116) 물론 기존의 신용카드서비스로도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한 결제를 이월하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소위 리볼빙 서비스)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월된 대금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수수료가 부과된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참조). 또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구매시에 결정할 개월 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상환하는 할부신용구매가 가능하고 최근 상당수의 신용카드업자들이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써 가맹점에 따라 선별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할부로 이연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가 붙는 것이 할부신용구매의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17) 법적으로는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수한 약정을 한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118)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1-2면; 박지홍, “[기고] 최근 지급결제시장 변화와 카드사의 대응 방향”, 대한금융신문 (2021. 7. 28.)

119)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용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용되는 자동차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할부금융의 경제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할부금융의 경제적 기능은 비교적 규모가 큰 재화의 구매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대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동차금융상품으로는 소위 오토론이라 불리는 자동차대출상품¹²⁰⁾과 오토할부라 불리는 자동차할부금융상품¹²¹⁾이 있는데, 이 둘의 경제적 기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실무에서도 상당수 캐피탈사가 두 가지 상품을 특별한 구분 없이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경제적 기능상 할부금융은 신용카드나 후불결제보다는 금융회사의 통상적인 대출상품에 더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의 정의를 보면 할부금융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처럼 할부금융이 매수인의 이자 지급을 개념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후불결제서비스는 소비자에 무이자로 제공된다는 점도 할부금융과 구분되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차별화된 모습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후불결제서비스와 유사한 금융상품이나 지급거래구조와 비교해 볼 때, 개념적으로나 거래구조상 후불결제서비스와 완전히 동일한 기존의 금융상품을 발견할 수는 없으나, 여신기능과 지급기능이 결합된 구매신용 공여 기반의 후불형 지급수단이라는 측면에서 후불결제서비스는 기존의 신용카드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불결제서비스는 형식적으로 신용카드라는 증표를 요구하지 않고 시장에 미치는 위험의 수준이나 양상 또한 신용카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후불결제업에 대하여는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참고하되, 후불결제서비스의 특성과 위험에 대응하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3.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입법형식

앞서 본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후불결제서비스는 전자금융업자(특히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의 편입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법 체계상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지급결제업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거래법 이자 (업)규제법이라 할 수 있는데,¹²²⁾ 그 중에서도 지급수단에 관한 한 현행법은 선불형과 직불형 전자지급수단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후불결제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신용공여를 기반으로 하는 후불형 지급수단으로서 선불형과 직불형 지급수단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던 전자금융거래법의 기존 체계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¹²³⁾ 이처럼 후불형 지급

금융을 말한다.“

120) 자동차대출은 “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직접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계약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금융회사에 상환하는 상품”이다[이상복, 여신전문금융업법 (박영사, 2021), 152면].

121) 자동차할부금융은 “소비자·판매자·할부금융회사 3자 간의 할부금융계약에 따라 자동차 구입대금을 금융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구입자가 금융회사에 계약기간 동안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하는 상품”이다[이상복, 여신전문금융업법 (박영사, 2021), 152면].

122) 정경영, “전자금융거래법의 체제와 최근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39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20), 275면; 정순섭, “디지털 금융혁신관련 법령분석과 향후 입법정책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20. 9. 30.), 22면 등.

123)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5면에서도 “BNPL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신용카드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동일 행위 동일 규제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이라든가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이라는 영업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원적인 규제체계를 둘 경우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수단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규율대상 체계와 맞지 않음에도 개정안이 후불결제서비스를 전자금융거래법에 신설한 것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에게 후불결제서비스를 허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는 일종의 기관별 규제 산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향하는 기능별 규제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¹²⁴⁾ 더욱이 디지털금융환경 속에서 금융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핀테크업체 또는 빅테크 금융 플랫폼과 기존 금융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관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규제차익을 방지하는 것일 텐데,¹²⁵⁾ 비슷한 신용 기반의 후불형 지급기능을 수행함에도 신용카드업에 대한 규제와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서로 다른 입법체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기능의 두 가지 서비스 사이에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제1항(특히 괄호 부분)을 보면 후불결제서비스의 수행주체에서 겸영전자금융업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데,¹²⁶⁾ 이러한 겸영전자금융업자의 대표적인 예가 은행, 신용카드업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신용카드를 매개로 후불형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던 금융회사가 동일한 기능의 후불결제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카드사는 본업이 후불이기 때문에 겸영전자금융업자 제외라는 것은 은행 제외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신용카드업자는 위 제외규정도 불구하고 후불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견해도 확인할 수 있는데,¹²⁷⁾ 위 규정의 괄호 부분 즉 “겸영전자금융업자를 제외한다”는 명백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용카드업자가 위 개정안의 입법 후에도 BNPL, 즉 후불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존 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관계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위 괄호 부분의 입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디지털금융의 발전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차원에서 금융 분야 법률의 개정 또는 입법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급수단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전자금융거래법을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 여신기능을 공통적으로 포함하지만 상호 관련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다양한 여신 관련 금융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소비자신용을 대상으로 한 일반법으로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여신기능과 지급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후불결제서비스를 어느 법에서 규율할지의 문제야말로 위의 다양한 입법논의와 모두 관련되어 있는 관계로 여러 법률의 제·개정 논의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불결제서비스가 도입된 해외의 주요 국가가 후불결제서비스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법률을 개정한 일본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음”이라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124)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방향은 기능별 규제를 지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개정방향” (2020. 7.), 9면].

125) 정순섭, “디지털금융혁신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의 발전과제”, 「여신금융」 2020년 가을호 (여신금융협회, 2020), 5면; 정준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 「핀테크와 디지털금융의 미래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 자료집」 (2021), 4면.

126) “전자금융업자(겸영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27) 예자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분석: 지급수단과 라이선스 규정 중심으로”, 「여신금융」 2021년 겨울호 (여신금융협회, 2021), 69면.

있을 것이다. 즉, 일본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후불 신용결제수단인 신용카드를 규율하던 기존 법체계인 할부판매법의 틀 안에서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리스크가 기존의 신용카드로 인한 리스크보다 낮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일종의 스몰라이센스로서 10만 엔을 신용한도로 한 ‘등록소액포괄신용구입업자(登録少額包括信用購入あつせん業者)’를 도입하였다.¹²⁸⁾ 이 외에도 앞서 본 호주, 미국, 영국 등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검토 중인 국가들도 기존에 신용카드를 포함한 소비자신용에 적용하던 규제를 후불결제서비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후불결제서비스는 선불형·직불형 지급수단을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던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적합하지 않고 신용공여상품이나 신용 기반의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규제의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지급수단 및 소비자신용 등에 관한 다양한 입법 논의를 감안할 때 지급수단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선불형·직불형·후불형 지급수단을 모두 규율대상으로 포함하거나 소비자신용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신용 기반의 후불형 지급수단까지도 포함할 경우 그러한 일반법이 후불결제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이 규제체계상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4.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위험요소 및 그에 대한 규제방향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후불결제서비스는 신용에 기반한 결제수단이라는 속성상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물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가장한 현금유통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후불결제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에 허용된 탓에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여 보유 중인 선불충전금, 즉 이용자 예탁금을 후불결제의 지급재원으로 전용할 우려도 있다.¹²⁹⁾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 무이자로 구매신용을 공여하도록 설계되어 소비자에게 기존 신용공여상품과 구별되는 편익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후불결제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차후에 소비자에게 구매신용 공여에 따른 대가를 어떤 명목으로든(이자 또는 수수료 등) 부과하는 형태로 사업모델을 변경할 위험도 크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규제는 후불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후불결제업자에 부과한 부가조건¹³⁰⁾이나 전

128) 일본 할부판매법(割賦販賣法) 제35조의2의11 등; 일본의 관련 법률 개정 과정과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割賦販賣法(後拂信用)の概要”(2021. 6.); 장명현, “일본의 소액후불결제업 도입을 위한 할부판매법 개정안 상정”, 「해외여신금융동향」 2020-5 (여신금융연구소, 2020), 3면; 신경희, “국내 BNPL 도입 현황과 규제 문제”, 「자본시장포커스」 2023-01호 (자본시장연구원, 2023), 4면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29) 이용자 예탁금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는, 오상승/손경국/조근태, “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 「지급결제학회지」 제14권 제1호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3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2021. 2. 18.): ① 후불결제 재원은 소비자의 선불충전금과 완전히 절연하고,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여 소비자 자금을 두텁게 보호할 것, ② 결제도용, 소위 ‘깡’ 등 후불결제서비스 제공에 따른 다양한 부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정거래의 유형을 모니터링할 것, ③ 그 명칭이 무엇이든 후불결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금전적 대가(이자, 수수료 등)를 받지 말 것, ④ 신용정보 조회, 연체 이자율, 채권 회수

자금용거래법 개정안의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행위제한¹³¹⁾에 반영되었다.

한편 후불결제서비스는 광의의 지급결제업무이기도 하지만 신용공여의 기능도 수반하기 때문에 다른 여신업과 비슷한 차원의 리스크 관리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조건으로 ① 분기별 총여신잔액은 사업자의 직전분기 총 결제규모의 20% 이하로 제한할 것, ② 자산건전성 분류 운용·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사항은 신용카드회사 신용판매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¹³²⁾ 향후 후불결제에 대한 정식 규제를 확립함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위험요인 이외에도 앞서 본 것처럼 후불결제서비스가 많이 활용되는 해외에서는, ① 후불결제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후불결제서비스가 신용상품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른 대금상환 조건이나 연체 수수료 발생 가능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 ②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소비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신용구매 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거나 대금상환 방법이 자동결제로 설정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점, ③ 후불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업체나 빅테크기업들이 후불결제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수익화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위협을 초래하는 점, ④ 후불결제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신용구매한도를 부여하고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그 연체 이력을 신용평가기관에 보고하거나 다른 후불결제서비스와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소비자가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연체율도 점차 증가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중 ①-③번에 대하여는, 앞서 본 해외 금융당국의 규제방안과 마찬가지로, 후불결제서비스의 내용과 조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후불결제서비스 신용공여한도 증액 시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소비자가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대금상환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후불결제업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엄격하게 감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④번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취지 중 하나가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접근기회를 확대

절차 등 주요사항에 대해 약관에 알기 쉽게 반영하고, 소비자가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고지할 것, ⑤ 소비자가 후불결제서비스 이용 문의, 분쟁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등.

131)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5조 제6항 대금결제업자는 후불결제업무를 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예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스스로 신용을 공여한 것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경제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되, 지연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3. 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용자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3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하고자 함인데,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마찬가지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 대하여도 기존의 금융정보 중심의 엄격한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시행하여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 소비자의 연체 이력을 다른 후불결제업자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후불결제서비스의 당초 도입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구분되는 후불결제서비스만의 차별성을 말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¹³³⁾ 또한 어떤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종전의 다른 금융서비스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위협의 수준이 낮다면 그 낮은 위협 수준에 비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비교하여 후불결제서비스의 신용공여한도가 낮고 후불결제업자가 신용공여의 대가도 받지 않는다면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위협 수준은 (개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른 신용공여상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여지도 있다.¹³⁴⁾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후불결제서비스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하여 그 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들은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연체 이력에 대한 공유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규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후불결제서비스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 증가를 염려하며 그 원인으로서 1) 후불결제서비스 가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안신용평가심사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 2) 소비자가 후불결제대금의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소비자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연체 이력이 다른 후불결제업자와 공유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관련 규제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¹³⁵⁾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연체율 증가와 채무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채무부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후불결제서비스 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먼저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채무부담 정도와 연체발생

13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48호, “네이버파이낸셜(주)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021. 2. 18.): 당초 금융위원회는 후불결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조건 중 하나로 “연체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이력부족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를 제한받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원문, 8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후불결제서비스를 도입한 취지에 대하여 “비정형·비금융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데이터 중심의 개인신용평가만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던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도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 설명한다.

134) 앞서 살펴 본 일본의 예에서 후불결제업에 대한 규제를 신용카드업에 대한 스몰라이센스 형태로 도입한 근거는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위협이 신용카드로 인한 위협보다 낮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앞서 영국의 규제논의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영국 재무부는 본질적으로 무이자를 특징으로 한 후불결제서비스의 위협이 이자를 수반하는 다른 신용상품의 위협보다 낮고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협수준에 비례한 균형 있는 규제(balanced and proportionate approach)가 모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HM Treasury, “Regulation of Buy-Now Pay-Later: Consultation” (2021), p. 7].

135) 연합뉴스 기사, “후불결제 서비스는 연체해도 신용점수 안 떨어진다” (2023. 1. 23.); 연합뉴스 기사, “핀테크 업계, 후불결제 연체증가에 고심...‘연체정보 공유해달라’” (2023. 1. 24.); 디지털타임스 기사, “토스 등 후불결제 연체 급속 증가” (2023. 1. 24.)

규모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양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 후 그러한 위험평가결과와 후불결제서비스의 당초 도입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제한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위 ④번의 문제에 대응한 규제방안을 대략적으로 구상해 본다면, 후불결제서비스의 도입 취지와 차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 대한 진입 단계에서의 사전 심사는 후불결제업자의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현행의 대안신용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그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후불결제업자로 하여금 대손충당금 등의 위험완충장치를 적정하게 갖추도록 하고,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가 후불결제대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그러한 사후 연체 정보는 다른 후불결제업자와도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핀테크업체의 지급결제 분야 새로운 사업모델로서의 후불결제서비스는 접근채널과 결제 방식에 있어서의 사용자 편의성과 무이자 신용공여라는 소비자 편익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호주, 영국, 미국, 스웨덴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이력부족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신용 기반 지급결제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혁신적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핀테크업체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수용하여 지급결제 분야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후불결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후불결제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 포함되어 있기도 한다.

후불결제서비스가 많이 활용되는 해외에서는 이미 후불결제서비스로 인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주된 문제로는, 후불결제서비스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후불결제업자가 소비자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가입 승인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 소비자가 후불결제업자에 대한 분할대금 상환을 연체하더라도 그 연체정보를 공유하거나 보고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는데, 이에 대하여 해외의 주요 금융당국들은 후불결제서비스도 기존의 신용공여상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신용법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규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은 후불결제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인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지 금융시스템안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규제에 있어서의 기능별 규제원칙 그리고 후불결제서비스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소비자신용법제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해외 주요 금융당국의 규제논의 등을 고려한다면, 기능 면에서 후불결제서비스와 유사한 신용카드 등의 신용공여상품에 대한 규제를 기본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신용조회와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연체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험 기반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먼저 후불결제서비스 이용자의 채무부담 정도와 연체발생 규모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위험의 정도와 양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거친 다음, 그 위험평가결과와 후불결제서비스의 당초 도입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의 정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가상자산 규제와 투자자보호



가상자산 규제와 이용자 보호

법무법인(유한) 바른
한서희 변호사

 BARUN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Contents

- I. 배경
- II. 가상자산 규제 현황
- II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 IV. 정리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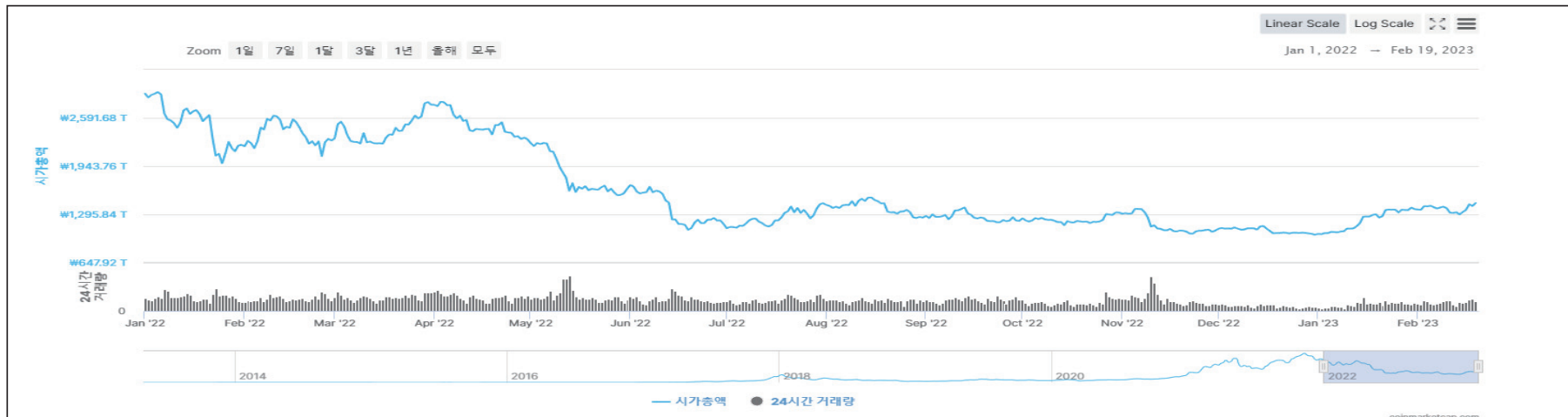


I. 배경



I. 배경

1. 가상자산시장 규모



(자료: <https://coinmarketcap.com>)

■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현황 (2023. 2. 19. 확인 <https://coinmarketcap.com/ko/charts/>)

- 총 개수(종류): [22,571](#)개
- 거래소: [547](#)개
- 가상자산 시가총액: [₩1,449,318,279,604,022](#)
- 24시간 거래량: [₩54,518,942,169,851](#)
- 도미넌스: [BTC: 42.6%](#) [ETH: 18.5%](#)

1. 배경

2. 2022. 5. 테라루나 급락사건

- 테라재단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 1UST(테라USD)는 그 가격이 1달러에 고정(pegging)되도록 설계되었음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 이용자는 1UST를 1달러에 상응하는 LUNA 로 교환할 권리를 갖고 있음. 1UST 시장 유통량 및 가격에 따라서 UST가 1달러를 넘으면 이용자가 시장에서 1UST를 파 매도하고 1UST가 1달러가 안되면 이용자가 1UST를 재단에 가져가서 1달러에 상응하는 루나를 받는 구조. 따라서 가격 하락기에는 이용자가 재단에 가져가서 1UST 유통량이 줄어 다시 1달러에 수렴하게 됨
- 1UST의 가격이 불안정해지자 재단에서 1UST 가격 방어를 위해서 루나를 추가발행하여 교환해주었으나 투자자들은 루나와 테라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고 투매현상이 벌어져 가격 동반 하락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거래소마다 상장 폐지시점이 상이하여 문제가 되었음
-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보호 이슈가 부각됨



출처 : 코인게코, <https://www.coingecko.com/ko/%EC%BD%94%EC%9D%B8/terra-luna-classic>

1. 배경

3. FTX 파산사태

- 11월 2일 오전 9시 코인데스크 기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차대조표 일부 공개
- 11월 6일 오전 10시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 \$500M 청산 발표
- 11월 6일 오전 11시 알라메다 CEO 캐롤라인: 바이낸스 보유 FTT를 \$22 매수 제안 (OTC)
- 11월 6일 오후 4시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 제안에도 불구하고, FTT를 청산하겠다고 발표
- 11월 7일 오전 8시 FTX CEO 샘뱅크먼 프리드: FTX의 자산은 문제 없다고 발표
- 11월 7일 오후 10시 FTT 토큰 급락: 가격이 \$22에서 \$18로 급격히 떨어짐
- 11월 8일 오전 9시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FTX의 인출 중단 확인
- 11월 8일 오전 11시 바이낸스 CEO 창평자오: FTX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의향서 서명 및 실사 작업 진행
- 11월 9일 오후 3시 바이낸스 트위터: FTX 실사 및 고객 자금의 잘못된 취급 등으로 인수 최종 철회
- 11월 9일 오후 5시 FTX CEO 샘뱅크먼 프리드: 지원 없을 시, 투자자들에게 파산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
- 11월 10일 오전 9시 FTX CEO 샘뱅크먼 프리드: 회사가 망했고, 알라메다 리서치도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
- 11월 10일 오전 10시 FTX 파산 보호 신청, 샘뱅크먼 프리드의 사임

✓ 출처 : COINDESK, [The Epic Collapse of Sam Bankman-Fried's FTX Exchange: A Crypto Markets Timeline](https://www.wsj.com/articles/ftx-tapped-into-customer-accounts-to-fund-risky-bets-setting-up-its-downfall-11668093732) heybit, "FTX 사태 요약 및 시장 영향 점검", <https://www.wsj.com/articles/ftx-tapped-into-customer-accounts-to-fund-risky-bets-setting-up-its-downfall-11668093732>

1. 배경

3. FTX 파산사태

●CFTC가 FTX 및 샘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소송 제기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v. SAMUEL BANKMAN-FRIED, FTX TRADING LTD D/B/A FTX.COM, ALAMEDA RESEARCH LLC, CAROLINE ELLISON and ZIXIAO “GARY” WANG Defendant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Case No. 1:22-cv-10503-PKC

소장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샘뱅크먼-프리드의 지시로 Wang 등의 FTX 임원진은 Alameda가 FTX의 신용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코드를 생성하였고 관계회사인 Alameda에 대하여 불공정하게 유리한 거래상 혜택을 부여하였는데, 예를 들면 자동청산에서 배제된다거나, 또는 거래의 실행 속도 등에 있어서 우선권을 부여하였음.

또한 FTX 관계자들은 FTX 이용약관에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완벽하게 그 소유권을 보장한다고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자산으로 고위험의 디지털자산사업에 투자하였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차, 부동산 구입 및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제공 등)로 사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유용하였음.

<https://www.cftc.gov/PressRoom/PressReleases/8644-22>)

참고로, SEC도 샘뱅크먼프리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현재 법안 논의 상황

최근 디지털자산시장 입법 동향

- [불공정거래규제 우선의 단계적 입법] 지난 10월 31일, 11월 10일 각각 발의된 윤창현의원안(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의원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아래와 같이 기존 디지털자산법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불공정거래 규제 조항과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

이용우의원안	김병욱의원안	양경숙의원안	권은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윤창현의원안	김은혜의원안	민병덕의원안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5)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3)	제1장 총칙(§1~§4)	제1장 총칙(§1~§7)	제1장 총칙(§1~§7)	제1장 총칙(§1~§4)
				제2장 디지털자산업 육성(§5~§9)	제2장 가상자산산업발전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8~§18)	제2장 가상자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8~§14)	제2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진흥(§5~§25)
						제3장 가상자산산업 지원 및 전문 인력자원 확충(§15~§17)	제3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인가(§26~§29)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4~§25)	제2장 가상자산업의 신고 및 등록(§6~§9)	제2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및 이용자 보호(§4~§19)	제2장 가상자산거래업의 인가(§4~§7)	제3장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등록 등(§10~§14)	제3장 가상자산사업 인가 및 가상자산 발행 등록(§19~§25)	제4장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른 인가 등(§18~§20)	제4장 디지털자산의 시선투자모집과 공식 발행 거래(§30~§33)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준칙(§10~§17)		제3장 가상자산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8~§18)	제4장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15~§28)	제4장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26~§32)	제5장 가상자산의 발행(§21)	제5장 디지털자산 금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34~§46)
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6)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18~§21)	제3장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감독(§20~§3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29)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33~§41)	제6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22~§27)	제6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47~§55)
	제5장 가상자산업협회(§22~§27)	제4장 가상자산업 관계 기관(§32~§39)		제6장 디지털자산사업자 협회(§30~§33)	제6장 가상자산사업자 단체(§42~§44)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28~§33)	제7장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관련 단체(§56~§60)
제4장 가상자산업관계 단체(§27~§30)	제6장 감독 및 영업정지 등(§28~§31)	※제3장에서 규정	제4장 보칙(§19~§20)	제7장 감독 및 처분(§34~§37)	제7장 감독 및 처분(§45~§52)	제8장 부정거래행위 등 금지(§34~§38)	제8장 감독 및 처분(§61~§68)
제5장 벌칙(§31~§35)	제7장 처벌(§32~§34)	제5장 벌칙 등(§40~§42)	제5장 벌칙(§21~§23)	제8장 벌칙(§38~§43)	제8장 벌칙(§53~§58)	제9장 가상자산사업자 협회(§39)	제9장 감독 및 처분(§40~§43)
						제10장 감독 및 처분(§40~§43)	제9장 벌칙(§69~§74)

II. 가상자산 규제 현황



II. 가상자산 규제 현황

1.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



특정금융정보법

-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률이므로 해당 법률 취지에 맞춰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규제 체계가 도입되었음
-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규정 및 사업자의 신고제를 도입하고(법 제 2조 및 제7조), 신고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고객 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의무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구조임(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
-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것은 다음과 같음(특정금융정보법 제8조 및 제10조의20)
 -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 고객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고객 예치금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등을 수행할 경우 거래제한 기준을 마련

II. 가상자산 규제 현황

2. 국회 제출법안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5조(예치금의 신탁)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자산의 보관) ① 디지털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2. 이용자가 소유하는 디지털자산의 종류 및 수량
- ②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자기 소유 디지털자산과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디지털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디지털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조(보험의 가입 등) 디지털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치금은 은행등에 신탁
- 디지털자산은 별도 보관 및 이용자 명부 작성
- 디지털자산의 분리 보관 및 현실 보관의무
- 인터넷과 분리 보관(하드웨어 보관)
- 해킹, 전산장애 등 대비하여 보험이나 공제 가입

II. 가상자산 규제 현황

3. 논의 상황



'22. 11. 14.(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담정 간담회」

①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보호 제도 우선 입법 필요

최근 루나·FTX사고 계기로 불공정거래 등 거래규제법 및 이용자 보호장치* 신속 입법 필요
先 보호입법 후 국제적 논의가 정리되는 것에 맞추어 업자 규제·산업 활성화 근거 등 제도권 기본법을 단계적으로 입법

②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및 예치금 분별관리의무 등 강화 필요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예치금 분별관리의무 외 신탁의무 등 도산격리 실현 및 가상자산 현실보관의무 반영 필요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토큰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

최근 FTX 사태 등에서 자회사와 자기발행토큰을 활용한 부적절한 자기거래·레버리지 거래 등 총체적 부실거래 사례 등장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 이용자 보호의 국면



이용자 보호 방안

- ① 보관 및 거래사업자 위험 전이 방지를 통한 보호 - 도산절연의 구현
- ② 발행자와의 정보비대칭 방지를 통한 보호 - 공시 제도의 정비
- ③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보호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④ 사업자의 행위 규제를 통한 보호 - 선관주의 의무, 건전성 규제 등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 이용자 보호의 국면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권리자의 권능

●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물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 찬성론 : 관리가능한 자연력으로서 물권성이 인정된다는 주장 으로 개인지갑을 통해서 특정성과 배타성이 인정되므로 물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 반대론 : 개인지갑의 보관이란 것은 배타성이 인정될 수 없음(개인 암호키 복제 및 공유 가능성)
- 사건으로는, 가상자산 보유자의 의도나 가상자산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때 물권에 준하는 보호가 이루어져야 타당하나 현행법 해석상 물권으로서의 배타적인 관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에 동의.
-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보유자는 물권적 지위를 향유할 수 없음(민법 제213조의 반환청구권,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 청구권 인정 불가)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1. 이용자 보호의 국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 - 현금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가단5026638 판결

고객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개설된 자신의 계정에 가상화폐를 입금하면 가상화폐에 대한 소유권 내지 처분권은 피고에게 이전되고, 고객은 피고에 대하여 **가상화폐 출고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피고는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 청산, 출금(출고)해주어야 하므로 고객의 가상화폐 매매에 대한 중개, 출금(출고)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노159 판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전 판결)

피해자가 A회사와 사이의 거래소 이용계약에 따라 A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이 사건 금원의 보관, 용도의 제한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없는 이상, 피해자가 A회사에 대하여 그 **포인트에 관한 원화전환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A회사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이 사건 금원을 위탁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가단5068564 판결

원·피고 사이에 형성된 이 사건 비트코인의 보관과 관련한 법률관계는 물건의 보관을 전제로 한 **민법상의 임치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갖는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비트코인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2. 이용자 보호와 도산 절연



가상자산과 도산절연

- 이용자 자산 보호 방법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고객 예치금의 분리보관, 가상자산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제출된 법안에서는 예치금의 은행 신탁, 디지털자산은 별도 보관 및 이용자 명부 작성, 디지털자산의 분리 보관 및 현실 보관의무 부여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이용자가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관시킨 경우 가상자산이 고객별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거래내역이 분리된 것과 보관 자체가 분리된것은 다른 문제임) 혼장임치에 유사한 법률 관계를 형성할 뿐으로서,로 이용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질 뿐임
- 이 경우 현행법상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의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고 선순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법 개정에도 따라서 고객 예치금에 대한 신탁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상자산의 경우 환취권 대상이 아니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을 반환받을 수 없음
-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위험, 즉 도산위험으로 부터 절연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신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재는 자본시장법 제10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대상 자산 중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신탁은 불가한 상황임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3. 정보비대칭과 공시



정보비대칭과 공시제도 필요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7.자 2022카합21703 결정)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과 공시제도의 필요성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의 내재가치에 대응되는 개념을 상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이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크게 의존하여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에 해당함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발행인의 지갑에 이를 보관한 다음 계획유통량에 따라 이를 추가로 유통하면서 그 수익을 얻는 구조인바, 발행인 측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시킴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들로서는 유통량 증가에 따른 가상자산의 시세하락 등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러한 유통행위는 즉시 적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계획유통량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어 사후적으로 발견하기는 것 역시 쉽지 아니함

▶주식시장에서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발행량, 증자, 감자, 소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권한을 가진 금융당국이 허위 내지 부실공시를 적발하게 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 위와 같은 공시사항을 강제하거나 규율할 수 있는 법규 내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를 적발할 권한을 부여받은 자도 없음

(함의)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발행과 유통량에 대한 공시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와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시장에서의 시세조종

① 통정매매(Cross-Trading)·가장매매(Wash Trade), ② 허수주문(Spoofing), ③ 치고 빠지기(Pump and Dump, P&D)등이 다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있으며,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어느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판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 7. 23. 2019노396 판결)

사실관계) 가공계정을 생성하여 여기에 허위의 가상화폐 포인트 및 KRW 포인트를 입력한 다음 봇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가공계정들 사이 또는 가공계정과 일반 회원계정 사이에 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행위를 약 2개월간 계속적·반복적으로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가공계정에 의한 거래와 실제 이용자 계정에 의한 거래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마치 실제 이용자들이 000의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정한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가상화폐의 시가와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용자들로부터 예약금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

판단) 사기죄 인정

Ⅲ.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4.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와 투자자 보호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 제출된 법안에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함.
- 다만, 법 적용 및 실제 운용 단계에서는 “내부자의 범위의 확정” 및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참고로 일본에서는 “고객의 거래 판단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미공개 중요정보이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이행하고 있지 않음

(류경은,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법적쟁점, 이용자의 권리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2022. 8. 서울대학교 상법석사 학위 논문 P54)

III.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5. 영업행위 규제



사업자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

- 고객의 예치금 보호 의무
 - 가상자산 사업자 예치 및 보유 의무, 동일 종목 동일 수량 보호의무 또는 피해보상계약 체결
 - ✓별도 보관의무를 규정하거나 보관이 특정기관에 집중될 경우 해킹 우려가 높아지는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외부 위탁 보관시 해킹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보험이나 공제제도 가입, 또는 준비금적립을 통한 보호
 - 일정 비율 이상을 하드월렛에 보관
 - 해킹방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의무
- 기타 영업행위 규제
 - 물적설비요건, 인적요건(진입규제)
 - 설명 의무, 백서 및 수수료 거래비용, 위험 고지의무, 약관교부의무
 - 광고규제
 - 신의성실의무: 공정한 가상자산업의 영위
 - 차별취급금지의무 : 취급대상 자산에 대한 차별취급금지
 - 상장 규칙 및 상장 폐지 규칙의 마련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 되도록 하지 않을 의무
 - 이해상충관리: 이용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IV. 결론(정리)



IV. 결론(정리)

- 2022년 여러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용자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임
- 2022년 11월의 FTX 사례나 최근의 크라켄 스테이킹프로그램 사건에서 언급된 것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자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가장 크게 문제되었음
- 특히 FTX 사례를 통해서 거래소 파산시 고객은 일반채권자로서 환취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상자산의 별도 보관 및 신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에 문제된 사안처럼 발행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해소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공시제도가 도입되어야 함. 이때 공시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하며 현재 법원에서는 거래소의 공익적 지위를 인정하였음
- 기타 영업행위 규제가 추가로 도입되어야 할 것임. 설명의무와 약관교부의무, 정보공개의무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분쟁조정제도나 피해보상 제도 역시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감사합니다.

한서희 변호사

 suhhee.han@barunlaw.com